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람



집필자 : 권태정, 김경미, 염승호, 이성주, 천용석, 최원종, 한새잎

검수자 : 박효영, 이경아, 이상근, 이승희, 이후일

※ 이름 순서는 가나다순임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 람

CONTENTS

I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요	04
	1.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범위	04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변화 과정	14

II	옥외광고 관리 업무	24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24
	2. 허가·신고의 취소	39
	3. 특정구역	39
	4. 정비시범구역	43
	5. 옥외광고심의위원회	44
	6.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52
	7. 옥외광고사업의 관리(법 제11조)	54

III	옥외광고 정비 업무	66
	1. 불법 광고물의 정의와 법적 근거	66
	2. 불법 광고물 처분(정비)	68
	3. 불법 광고물 위반 등에 대한 조치	70
	4. 불법 광고물 정비 시책	72

IV	옥외광고 행정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78
	1. 업무(민원)처리 절차	78
	2. 업무 따라하기	79
	3. 서울광장(www.saiall.go.kr) 안내	120
	4. 옥외광고 행정시스템 질의 및 답변	124

부록 126

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의 독자에게...

■ ■ ■

본 편람의 배포 목적은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처음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업무의 빠른 이해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표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실무의 편차를 줄이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옥외광고 행정업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과 법률적 근거 및 해설, 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편람의 내용상 기준이 되는 법률 및 시행령, 조례는 다음과 같다.

-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5호, 시행 2019.06.25.)
- 시·도 조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2019.07.22. 배포]
- 시·군·구 조례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2016.09.12. 배포]

시·도 및 시·군·구 조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본 편람을 참고하는 공무원은 이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본 편람을 통해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 없는 옥외광고 행정실무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 람

I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I.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요

1.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범위

1)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정의와 개념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건물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며, 최근에는 OOH(Out Of Home)광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집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범주는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와 산업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그리고 학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시간적·공간적·형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적 특성으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시적인 게시물과 구분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라는 용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제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형태적 특성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예시를 통해 추상성을 낮춰 구체화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에 물체를 뜻하는 “물”을 붙여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의 규제사항들이 광고물의 제작·설치·외형 등과 관련이 있으며, 광고내용이나 문구에 대한 규제사항은 옥외광고물법보다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타법에서의 규제사항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분류를 총 16종(특정광고물 제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6종 광고물 분류 중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8종에 한해 디지털광고물로 표시가 가능하고 나머지 8종은 불가능하다.

그림 1 광고물 분류별 예시 및 디지털광고물 적용 가능 여부

광고물 분류	예시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가능
돌출간판	 	불가능

공연간판		가능
옥상간판		가능
지주 이용 간판		가능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능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가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일부 가능

선전탑		불가능
아치광고물		불가능
애드벌룬		불가능
창문 이용 광고물		가능

입간판		불가능
현수막		불가능
벽보		불가능

전단		불가능
----	--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른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헌법」 제 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위임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나뉜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재정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며, 국가사무의 위임처리에는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 132조 단서 조항).

조례 제정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고 할 수 있다.

관리·감독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사무감사·회계감사 등 관여를 받는다는 점과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협용되는 경우에도 합법성 감독이나 사후감독에 그치는 반면,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자치사무보다 광범위하며 합목적성 감독 및 사전감독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무처리의 경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치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라서 사무처리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해, 단체위임사무는 위임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의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1에서 시·군·자치구 사무(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무에 있어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한적¹⁾이며, 셋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위법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옥외광고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고유사무)라 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등 의 표시 방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등에 한함

이에 본 편람에서 지칭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라 함은 옥외광고물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관한 자치단체의 모든 관리 업무를 말한다. 자치단체의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근거는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 옥외광고물의 법률적 관리 체계



단계별로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과 광고물의 정의, 허가·신고, 금지 또는 제한, 안전점검, 광고물 정비, 처벌 등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의무 사항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에서는 추가적인 내용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다음은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크게 5가지로 나눠 제시한다.

① 광고물 등의 인허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시·설치 방법이나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③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에 고정광고물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는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과 교육

법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12조에서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

법 제6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62개 자치단체(광역 1개, 기초 161개)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변화 과정

1) 옥외광고물법령의 주요 제·개정에 따른 행정업무 변화

옥외광고 행정업무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는 만큼 옥외광고물법의 제·개정은 행정업무에 많은 변화 가져온다. 이에 옥외광고물법령의 주요 제·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 및 행정업무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1962년)

옥외광고물법은 현행의 법령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약 58년의 역사를 가진다. 1962년 1월 20일, 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물건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광고물단속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광고물의 정의를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첨지와 표찰 등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건물 기타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정의와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다. 당시 법률의 조문 구성은 전체 7조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법률이었다. 당시 광고물은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된 장소의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중심으로 했다. 기본적인 단속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었으나 권한의 일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다.

② 단속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 (1980년)

1980년 1월 4일, 법명이 「광고물단속법」에서 「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광고물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的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권한의 위임에서 위임받는 자가 관할경찰서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부산시에 한함)으로 개정되었다.

③ 광고물 인허가제와 광고업 신고제 도입 (1990년)

1990년 8월 1일, 전부개정으로 법명이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초로 광고물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조문의 구성도 기존의 7조에서 21조로 대폭 늘어나면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적용배제, 안전도검사, 광고업신고, 교육, 수수료, 과태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안전도검사와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물 인허가제와 광고업 신고제 등 다양한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법률에서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했다. 이때부터 현재 법률 구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④ 옥외광고물법 대통령령 제정 (1991년)

1990년 법률의 전부개정 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1월 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조문은 7장 46조로 구성되었으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하고 허가 및 신고의 절차를 명시했다. 옥외광고물을 17종²⁾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광고물 분류별 표시방법을 모두 규정했다. 다만, 지하철·철도·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간판 중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시행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때 구성된 내용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별지서식이 수록되어 행정업무에 필요한 문서의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1990년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플랜카드,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⑤ 옥외광고사업협회 설립 (1992년)

1992년 12월 8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⑥ 광고물 관리자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포함 (1999년)

1999년 1월 18일,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서 위반에 대한 조치의 대상인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에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를 포함 시킴으로서 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

⑦ 일부 광고물 표시방법의 시·도 조례 위임 (1999년)

1999년 2월 26일,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으로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7종의 표시방법이 시행령상에서 삭제되고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다.

⑧ 광고물 인허가 권한자 변경(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대집행 특례 신설 (2001년)

2001년 7월 24일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권한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도검사,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등의 행정사무가 이관되었다.

또한, 시장 등이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되었다.

⑨ 1차 특정구역 지정의 권한자 변경 및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2004년)

2004년 12월 23일, 법률 일부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의 권한자가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옥외광고업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겼다.

⑩ 광역단위 광고물, 국가의 책무,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 한국옥외광고센터 신설 (2007년)

2007년 12월 21일,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 운영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신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 및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의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국가의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활용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⑪ 자사광고와 타사광고 용어 도입 (2008년, 2011년)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상 최초로 “자사광고”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사실상 자사광고의 개념은 이전 대통령령 제10조제2항1호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그 개념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법적 용어가 없었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타사광고”라는 용어는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⑫ 간판개선사업 추진 근거 신설 및 2차 특정구역 지정의 권한자 변경 (2011년)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별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법률의 개정에서는 특정지역 지정의 권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다시 시·도지사로 복원되었다.

⑬ 새로운 광고물의 도입(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및 입간판 신설) (2014년)

2014년 8월 6일,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택시표시 등에 전광류를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광고물의 시범운영이 도입되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수업종사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지속해 온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2019년 현재, 시범운영 지역을 인천광역시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4년 12월 9일,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으로 입간판이 도입되었다. 법률의 정의에는 광고물의 구체적인 예시로 입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광고물 분류 또는 표시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입간판의 표시방법과 신고 기준이 마련되었다.

⑭ 관리에서 진흥으로 변화 (디지털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위반 광고물에 대한 시·도지사 합동점검) (2016년)

2016년 1월 6일, 법률의 일부개정은 옥외광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관리에서 진흥으로 바뀌는 것을 잘 나타내주었다. 법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진흥을 위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었다. 특히 광고물의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되었으며,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합동점검이 새로운 제도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시장 등만 진행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광역·도지사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 등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조치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위의 법률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6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6년 7월 7일자로 시행되었다.

⑮ 자사광고의 표시기간 제한 적용 제외 (2017년)

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중 일부개정으로 기존 모든 광고물에 적용되었던 표시기간 제한이 자사광고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었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표 1 옥외광고물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제·개정 일자	구분	법령명	내용
1962.01.20	법률	광고물단속법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1980.01.04	법률	광고물등관리법	단속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
1990.08.01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광고물 인허가제와 광고업 신고제 도입
1991.01.08	대통령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옥외광고물법 대통령령 제정
1992.12.08	법률	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사업협회 설립
1999.01.18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관리자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포함
1999.02.26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광고물 표시방법의 시·도 조례 위임
2001.07.24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인허가 권한자 변경(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대집행 특례 신설
2004.12.23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차 특정구역 지정의 권한자 변경 및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2007.12.21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역단위 광고물, 국가의 책무,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 한국옥외광고센터 신설
2008.07.09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자사광고 용어 도입
2011.03.29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간판개선사업 추진 근거 신설 및 2차 특정구역 지정의 권한자 변경
2011.10.10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타사광고 용어 도입
2014.08.06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새로운 광고물의 도입(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및 입간판 신설)
2016.01.06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리에서 진흥으로 변화 (디지털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위반 광고물에 대한 시·도지사 합동점검)
2016.07.07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사광고의 표시기간 제한 적용 제외
2017.12.29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옥외광고물 관리주체의 변화와 업무 영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정책 및 국가체계의 변화 역시 옥외광고 행정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 행정업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한다.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의 단위였다. 이후 1961년~1995년까지 시·도지사 및 시·군의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제가 잠시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하였으며,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한 이후 우리나라 관청(官廳)의 구조를 살펴보면, 관청이라 함은 법률로 정해진 국가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총칭한다.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관청은 그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사법관청과 행정관청으로 나뉘며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뉜다.

지방관청은 국가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데,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바로 지방관청이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관청은 국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위해 자치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끔 변화하였다. 지방관청은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청·군청·자치구가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없으며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으로 행정시, 일반구, 읍, 면, 동(행정동, 법정동)이 존재한다.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의 명칭은 2007년 8월 이전에는 읍·면·동사무소로 불렸으며, 2007년 9월부터 2015년까지는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이는 2016년 이후

점차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순차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만해도 지역의 행정업무를 다양하게 다루었으나 주민센터로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시·군·구청으로 이양되면서 옥외광고 행정업무도 함께 이양되었다.

이러한 국가체계의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주체 또는 권한자도 변화했는데, 법령에서 사무를 받은 주체가 시·도지사(경찰서장 위임)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위임) → 시·군·구청장으로 변화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권한과 책임·의무를 가지는 단위는 시·도 및 시·군·구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규모나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역에 일부 사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일부 사무를 행정구역에 위임하는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는 아직 없으나 경기도와 같이 지리적 형태상 하나의 자치구청에서 관할 지역의 행정을 모두 관할하기 어려운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같이 행정시나 일반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광고물의 허가·신고를 관리하기도 한다.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 람

II

옥외광고 관리 업무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II. 옥외광고 관리 업무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부분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업무이다. 허가 및 신고 업무를 기본으로 법 위반 민원 상담, 광고물 단속 업무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간판개선사업 등의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처리시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의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기반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규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법률 해석을 적용해선 안될 것이다.

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에서 제5조, 시·도 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한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및 허가 신고배제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등(영 제4조, 제5조)

- 벽면이용간판 : 3층 이하에 표시하고, 면적 $5m^2$ 미만인 것
건물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 창문이용광고물 : 아래사향에 해당되지 않는 창문이용광고물
 -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 전광류(허가대상)
 -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네온류 · 전광류(허가대상)
 - * 디지털광고물(허가대상)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지하도 · 지하철역 · 철도역 · 공항 ·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시설 관리청이 관리)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29조)
 - *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 허가 · 신고 등 적용배제
 - *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 관할 시장등과 사전 협의
- 기금조성용 광고물 등(법 제6조제3항, 제4항) : 관할 시장등과 사전 협의
- 적용배제 광고물 등(법 제8조) : 표시 ·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

표 2 허가 ·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제5조, 시 · 도 조례 표준(안))

구 분	허 가	신 고	신고배제 대상
벽면 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면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 4층 이상 벽면 등 설치하는 타사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5m^2$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표시하는 자사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3층 이하 표시하며 면적이 $5m^2$ 미만의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간판 · 한 면 면적 $1m^2$ 이상인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약국 · 이 · 미용업소 표지 등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간판 · 한 면 면적 $1m^2$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제외한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지주 이용간판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입간판	-	· 모든 입간판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허가대상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애드벌룬 	—	
벽보, 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벽보 및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광고물 제외한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항만 시설 내부에 표시(시설 관리청 관리)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 광고물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용 자동차, 개인용 화물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외부 표시 광고물(시설 관리청 관리)
선전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선전탑 	—	
아치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아치광고물 	—	
창문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1층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의 면적 4분의 1 이내 1㎡ 이하인 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3층 이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의 면적 4분의 1 이내 1㎡ 이하인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로 표시한 광고물(입체형 광고는 2층 이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변화 없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내용 평면적, 수시 변화 디지털 광고물 내용 공간적, 입체적, 수시 변화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열등, 형광등 이용 내부 조명 광고물 광원 직접 노출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광고물 설치 위한 게시시설 면적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대상 광고물 설치 위한 게시시설 * 면적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외 	

2) 혀가·신고대상 지역·장소·물건

법 제3조, 영 제6조에서 규정한 혀가 및 신고대상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혀가 · 신고 대상 지역 · 장소 및 물건 (법 제3조, 영 제6조)

heimer · 신고대상 지역 · 장소	heimer · 신고대상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궤도 · 하천 및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영 제6조)</u> ↳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궤도 및 하천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차량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 (선박법) 기선 및 범선 ○ (항공법) 항공기 및 조경량 비행장치

3) 혀가·신고 수리기관

- 일반적인 광고물(법 제3조, 영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혀가를 받거나 신고(heimer·신고사항 변경 포함)
- 광역 단위 광고물(법 제3조의2, 영 제11조)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 광역단위 광고물(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4) 허가·신고 제출 서류

영 제6조,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한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허가·신고 제출 서류 (영 제6조, 시·군·구 조례 표준안)

구 분	허 가	신고
제 출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표시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 ○ 타인소유 토지·물건 등 광고물 표시하는 경우 : 승낙 증명서류 ○ 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한 광고물로 조례가 정하는 심의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市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 옥상간판(높이 1.8m 이내 제외, 옥상고정 애드벌룬 포함) 표시허가 -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 - 1면 표시면적 10㎡ 이상의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광고물 표시허가 -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구조안전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옥상에 별도 게시시설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 광고물 <p>※ 허가 시 원색사진, 설명서, 설계도서 제출 생략 (구·군 조례에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면서 높이 4m 미만인 경우 - 선전탑,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표시신청 및 안전점검신청서 ○ 타인소유 토지·물건 등 광고물 표시하는 경우 : 승낙 증명서류(건축물 및 토지 사용 승낙서 등)
처리기간	7일	3일
표시 허가증 교부	<p>허가·신고 : 허가권자(신고수리권자)가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수리)한 때</p> <p>* 현수막·벽보·전단 : (구 조례 제3조) 우측 하단 여백 검인, 압인,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 갈음</p>	

유의사항

- 허가·신고 업무처리 시 확인 필요한 서류(법정의무 서류 아님)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차량등록증 등
 - * 자사광고(소유주 확인), 타사광고(소유주, 사업용) 확인 필요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협약서(공공시설물 관리자 ↔ 공공시설물 광고사업자) 등
 - *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사업권 확인 필요(사용승락 증명서 같음)
 - 예시) 승차대관련 광고사업권 협약서(구청 교통과 ↔ 광고사업자),
지상변압기함관련 광고사업권 협약서(한국전력공사 ↔ 광고사업자)
- 신고대상 광고물 : 설계도
 -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구조 확인을 위해 설계도 확인 필요

5) 허가·신고 수리의 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법 제5조)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한 광고물,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한 광고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 광고물은 제외)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광고표시내용 등 제한사항 위반되는지 여부 등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준수할 것(영 제12조~제25조)
 - 종류별 광고물 등의 세부표시·설치방법 및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등 저촉 여부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

시·도 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

구 분	시행령	시·도 조례 표준(안)
벽면 이용간판		제8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		제9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		제10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지주 이용 간판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입간판		제11조 (입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제1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벽보		제14조 (벽보의 표시방법)
전단		제15조 (전단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아치광고물		제16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		제17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7)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영 제8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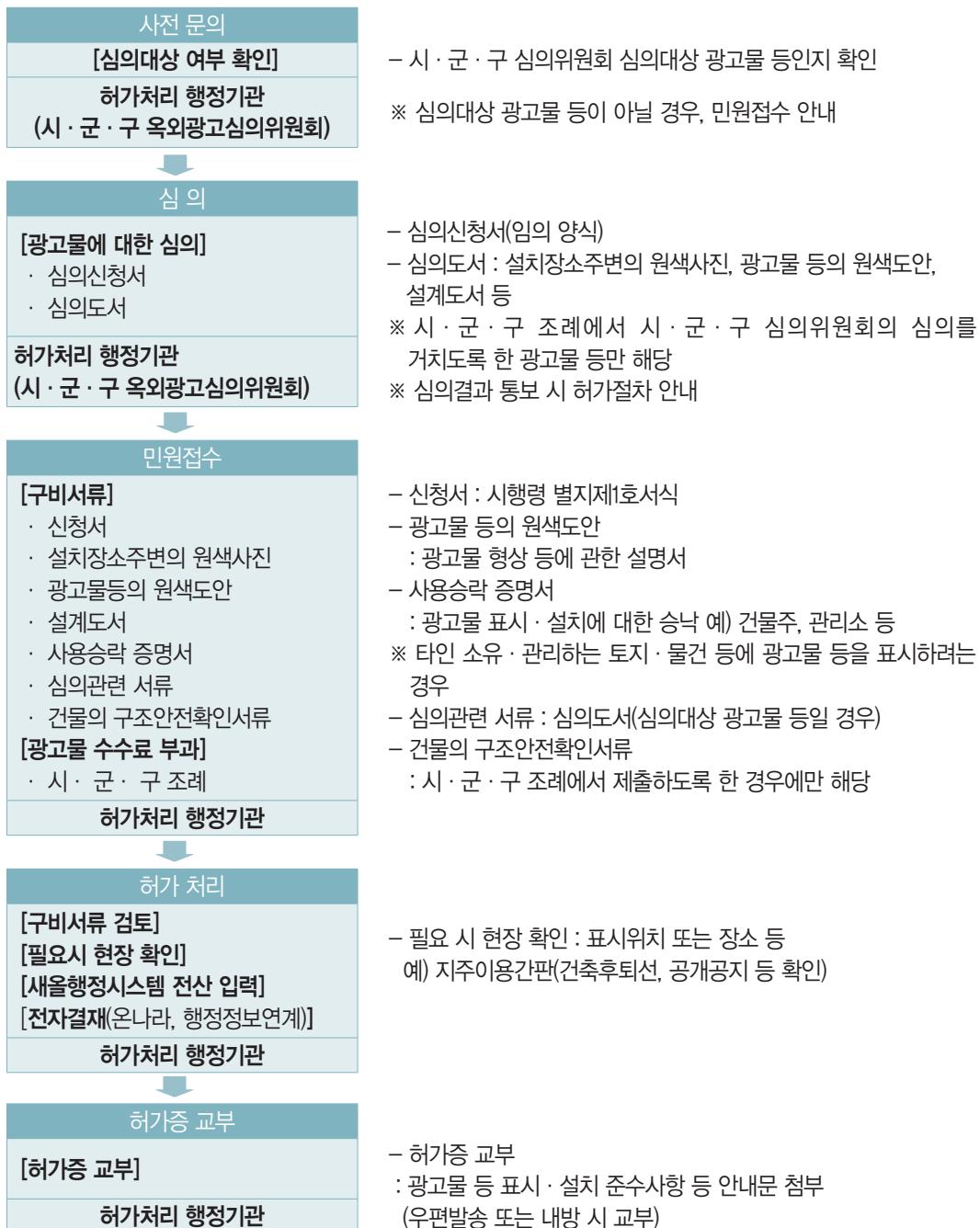
표 6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기 간	해당 광고물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 벽보 · 전단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비행선(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중에 띠우는 경우)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간판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게시시설 · 애드벌룬(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공사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3년 범위에서 행안부 장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광고물

8) 허가 처리절차

영 제7조1항에서 규정한 허가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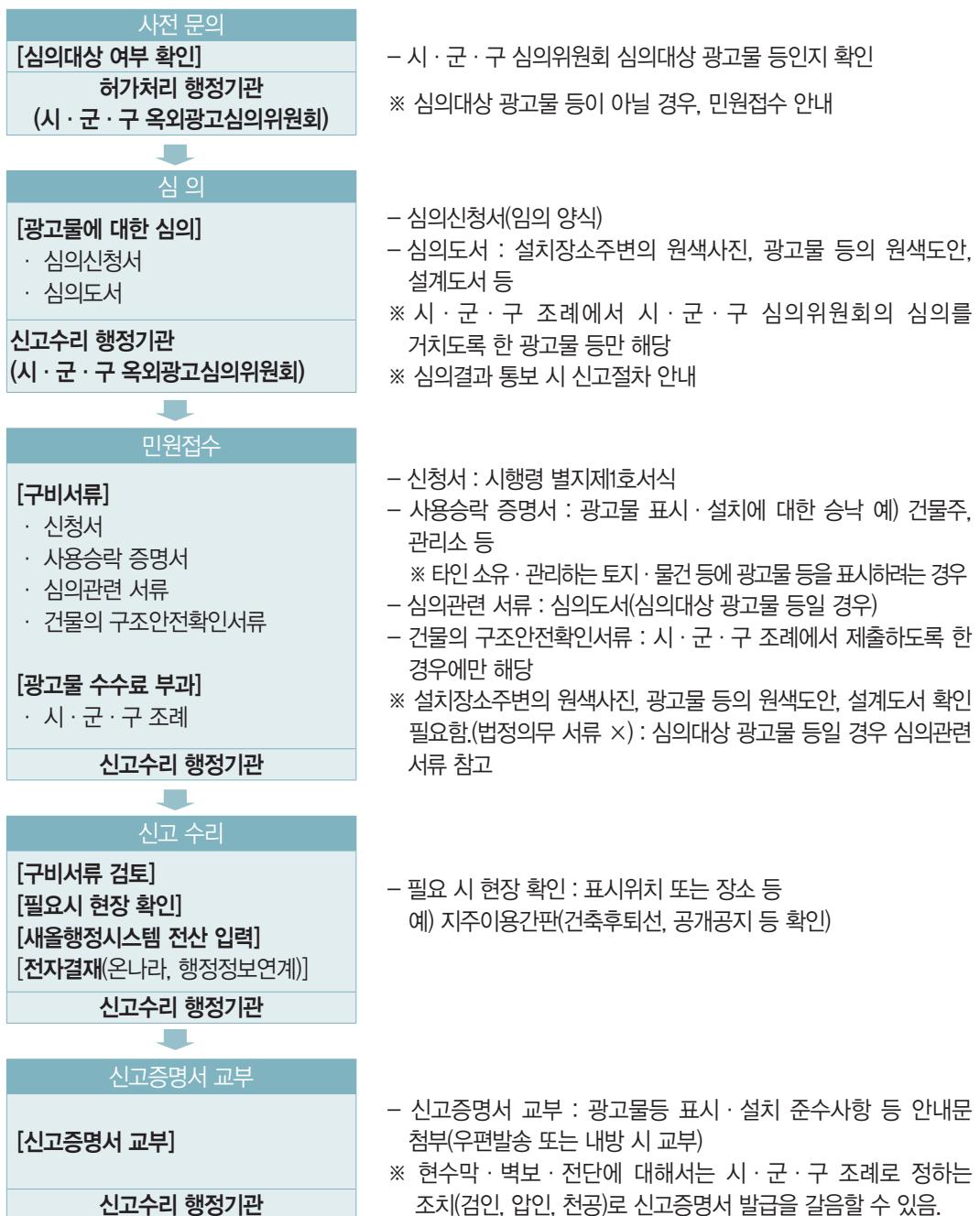
표 7 허가 처리절차



9) 신고 처리절차

영 제7조2항에서 규정한 신고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신고 처리절차



10) 변경허가·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영 제9조1항·2항·4항·5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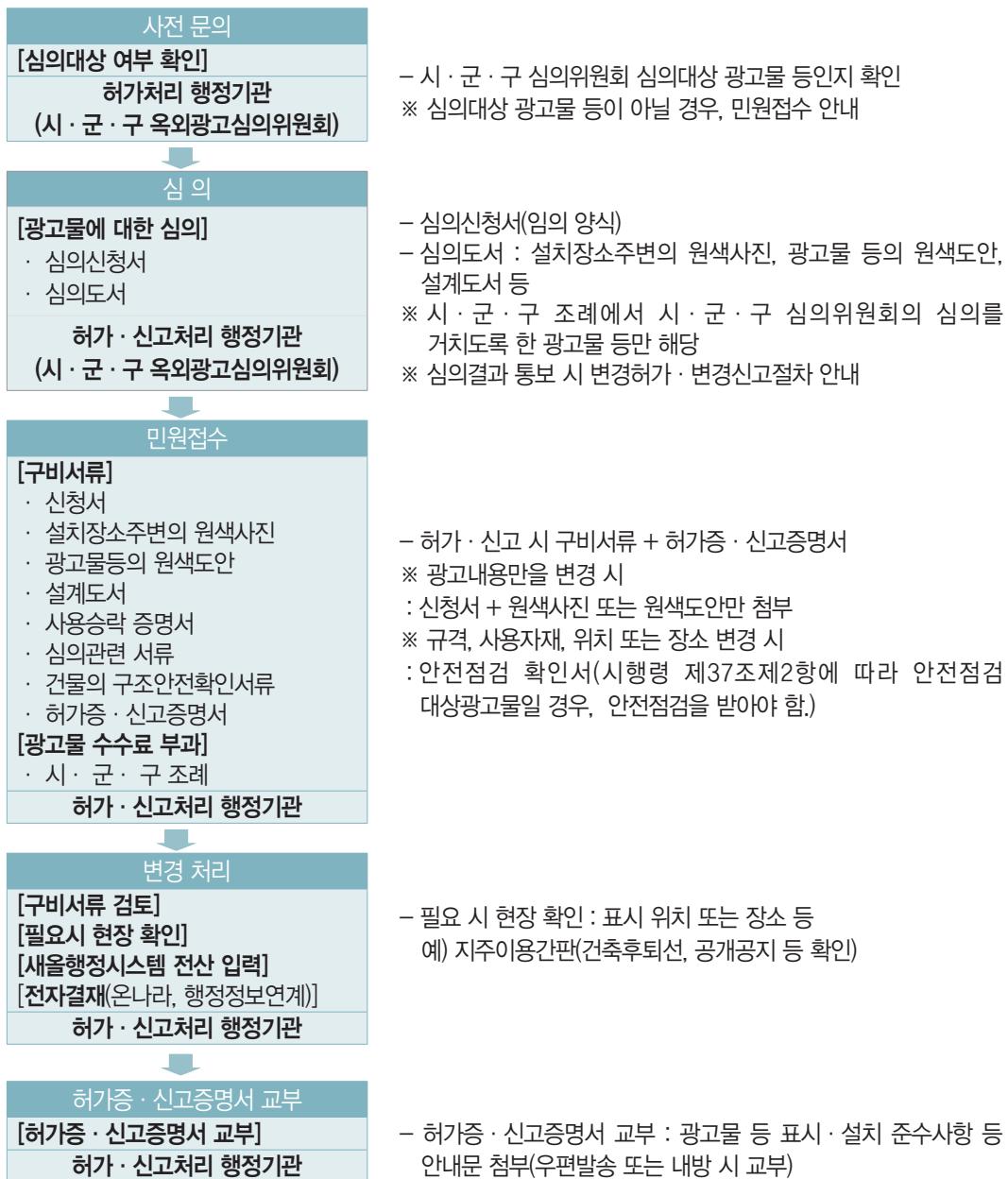
표 9 변경허가·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구 분	허 가(영 제9조1항·2항)	신 고(영 제9조4항·5항)
제 출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시행령 별지제1호서식) ○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 ○ 타인 소유·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사용승락증명서 ○ 심의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 ○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만 해당) <p>[제출서류 축소 및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을 첨부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없이 변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시행령 별지제1호서식) ○ 타인 소유·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사용승락증명서 ○ 심의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 ○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만 해당)

11)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 절차

법 제3조, 영 제9조에서 규정한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절차



12) 광고물 관리자의 변경

- 대상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

※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를 받은 자'가 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하지만, 시행령 별지제3호서식에 '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음을 감안하면 '표시 신고를 받은 자'가 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 시에도 변경사항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6.>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 내용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광고물 관리자(법 제10조)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제출기간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시행령 별지제3호서식),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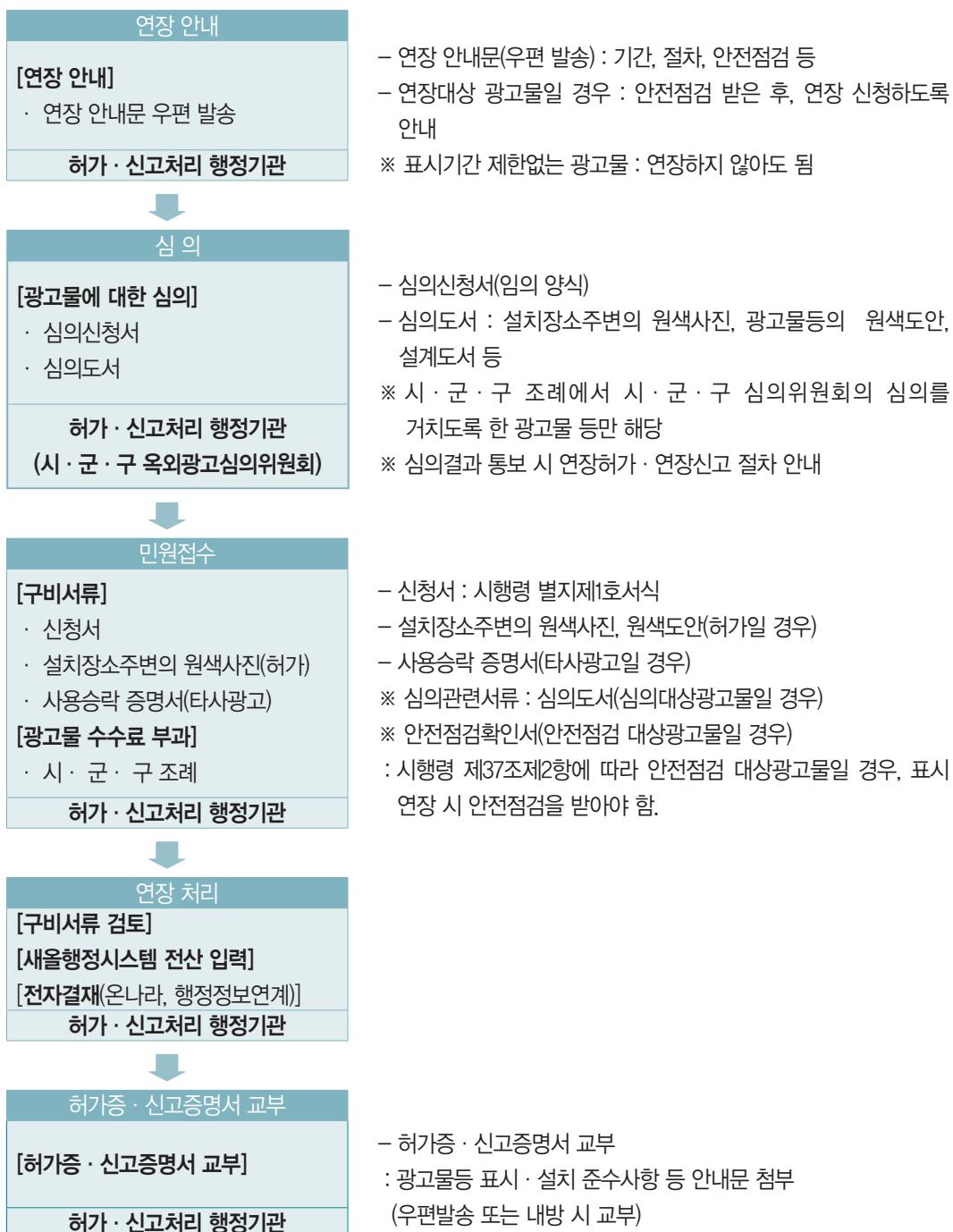
13)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 연장대상 광고물(법 제3조, 영 제10조)
 - 표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등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
- ※ 표시기간 제한 없는 광고물(연장하지 않아도 됨)(시행령 별표1)
 - : 허가·신고를 하고,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 제출기한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종전 표시기간 1년 미만인 광고물 등 :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허가의 경우), 사용 승락 증명서(타사광고의 경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시행령 제36조) : 안전점검 확인서
- 표시기간 :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

14) 광고물 등의 연장 처리절차

법 제3조,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 연장 처리절차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광고물 등의 연장 처리절차



- 연장 안내문(우편 발송) : 기간, 절차, 안전점검 등
- 연장대상 광고물일 경우 : 안전점검 받은 후, 연장 신청하도록 안내
- ※ 표시기간 제한없는 광고물 : 연장하지 않아도 됨

- 심의신청서(임의 양식)
- 심의도서 : 설치장소주변의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
- ※ 시 · 군 · 구 조례에서 시 · 군 ·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 ※ 심의결과 통보 시 연장허가 · 연장신고 절차 안내

- 신청서 : 시행령 별지제1호서식
- 설치장소주변의 원색사진, 원색도안(허가일 경우)
- 사용승락 증명서(타사광고일 경우)
- ※ 심의관련서류 : 심의도서(심의대상광고물일 경우)
- ※ 안전점검확인서(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일 경우)
-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일 경우, 표시 연장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허가증 · 신고증명서 교부
- 광고물등 표시 · 설치 준수사항 등 안내문 첨부
(우편발송 또는 내방 시 교부)

2. 허가·신고의 취소

- 시장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즉시 취소, 반려)
 - 법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첨문

- 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첨문'을 선행해야 한다.

제15조(첨문)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첨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3. 특정구역

1) 특정구역이란

시,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공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42호, 1991. 1. 8.

제정]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특정구역의 지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었다.
- 이후 지자체마다 지나치게 완화 또는 강화되는 특정구역 지정권한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6호, 2011. 3. 29, 일부개정]”에서 시·도지사로 다시 이양되었다.

2) 특정구역의 구분

특정구역은 표시방법 완화, 표시방법 강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완화와 강화에 따라서 지정가능 구역 및 내용, 제외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지정절차 및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표시방법 완화와는 다르게 표시방법 강화의 경우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정구역은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정구역 고시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허가 신고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허가신고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특정구역에 신고배제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특정구역의 표시방법을 이유로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특정구역의 지정가능 구역을 살펴보면 완화구역에는 관광지 주변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지정된 특정구역에도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강화된 광고물은 완화할 수 없다.

표 12 특정구역의 종류

구분	표시방법 완화	표시방법 강화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정 가능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장소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3호³⁾ 및 제4호⁴⁾(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 특정구역에서 강화된 광고물은 완화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 은행 – 시도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장 – 법제6조제2항에 다른 국가 등의 청사 –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한 사업장

3)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 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래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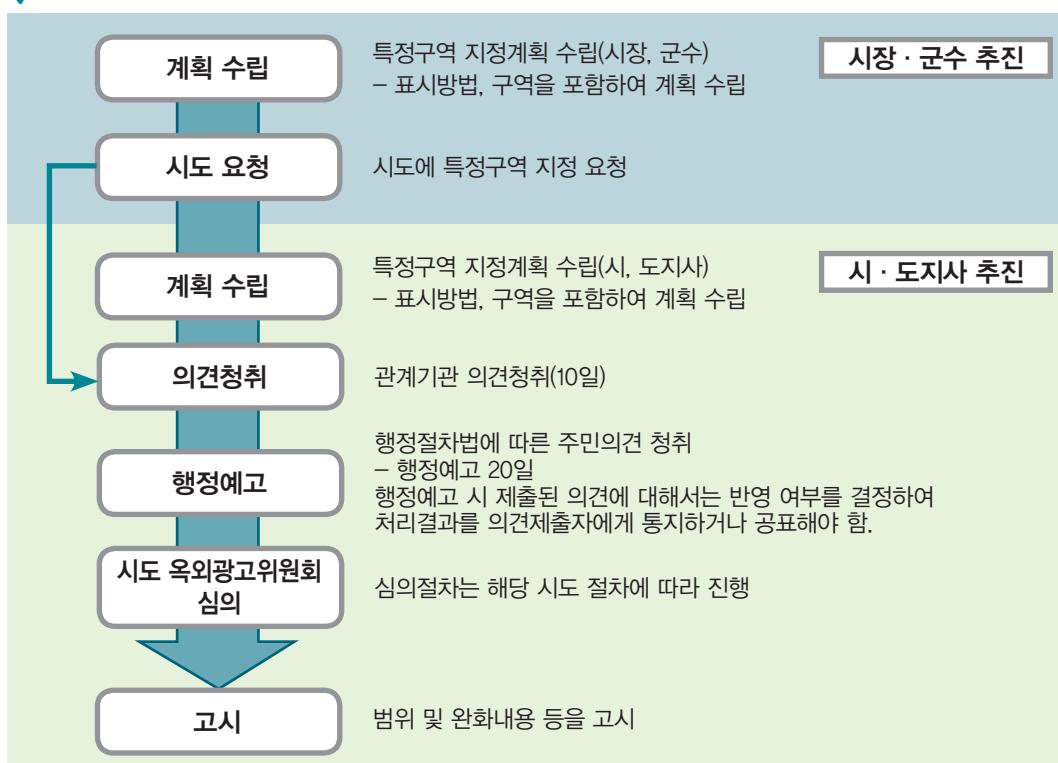
3) 특정구역의 지정절차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특정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나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령에서 각각의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특정구역 지정시 해당 시도조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그림 3 특정구역 지정절차



4. 정비시범구역

1)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위한 지역을 말하며 광고물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이 지원이 가능한 구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지정가능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6호, 2011. 3. 29. 일부개정]에서 처음 정비시범구역을 명시하였으며 특정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시장군수에게는 자율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을 위임하였다.

2) 정비시범구역의 구분

정비시범구역은 시행령 및 시도조례에서 지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가 가능하다.

3)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절차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정구역과 같이 의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거나 통지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 근 거 : 법 제7조, 영 제32조, 시·도 조례 제23조, 시·군·구 조례 제13조

2) 구 성 : 위원장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업무담당 공무원
- 국어 ·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전문가
- 그 밖의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

※ 「양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 구 성(위원회)

임 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 사	비 고
2년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당연직)	위원장 지명	소속 공무원 1명 (과장 혹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궐위원 : 전임자 남은 임기 공무원 : 재직기간

- 구 성(소위원회)

위 원	위원장	심의안건	비 고
3명 ~ 5명 (위원장 포함)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인정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심의회의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기준 등 소심의회의 운영 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운 영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불가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회의방법 :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대면·화상회의, 서면심의 등
- 처리기한 : 문서 접수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 10일) 이내 심의 처리
※ 불가피한 경우 :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 10일)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안건처리

- 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가능
-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 임원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 관여했던 경우
-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한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 수당
 -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 불가

4)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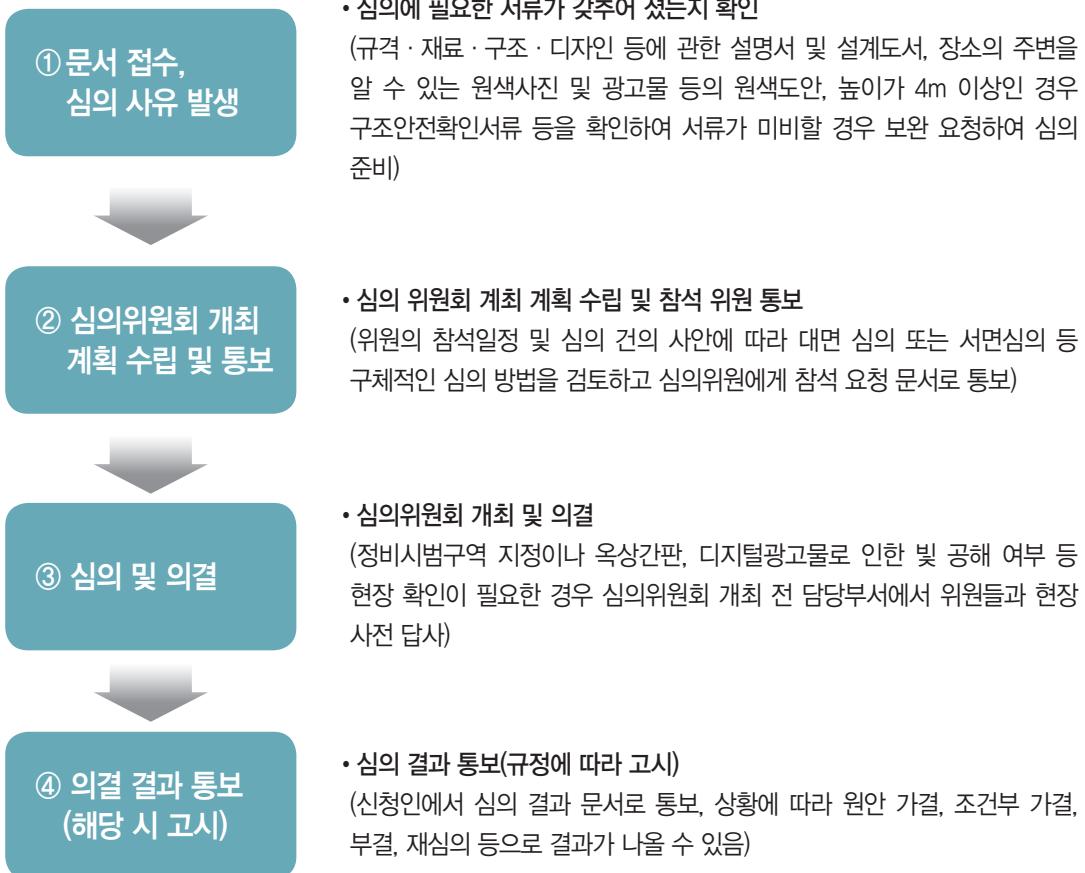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1항)
-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자계시대의 표출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시·군·구 조례 제6조제1항)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시·군·구 조례 제10조)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 표시 여부(시·군·구 조례 제12조제1항)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시·군·구 조례 제14조 제1항)
- 표시면적 20m²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m²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 실시 후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 여부(시·군·구 조례 제26조제3항)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여부(영 제26조제3항)
-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영 제37조제1항)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영 제49조제1항)
 -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시·도 조례 제2조제1항)
 -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상정할 경우(시·도 조례 제2조제1항)
 -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하기 위한 간판의 설치 여부(시·도 조례 제2조제2항)
 -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 2분의 1 이상 사용 여부(시·도 조례 제2조제2항)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규정 위반 여부(시·도 조례 제4조제3항)
 - 같은 부지의 2개 이상의 업소에서 여건상 연립형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 추가 설치 여부(시·도 조례 제6조제1항)
 - 1면의 면적이 0.36m²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을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표시 가능 여부(시·도 조례 제9조)
 -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시·도 조례 제27조제5항)
- ※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기준

5) 심의사항

- 처리기한 : 문서 접수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 10일) 이내 심의 처리
- ※ 불가피한 경우 :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 10일)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

그림 4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의 효력

광고물 심의의 효력[대법원 2000.5.26. 선고97누15135 판결]

가.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 및 효력 여부

☞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탑의 모양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시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위 같은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색채 등의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은 건물의 옥상에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지방건축위원회가 광고탑축조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옥상간판 사이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이전에 그 설치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광고탑축조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물이나 그로부터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간판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허가, 부관(조건)의 효력

허가, 부관(조건)의 효력[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56883, 판결]

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여부

☞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 여부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표 13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신규□, 변경□]					처 리 기 한	
					15 일	
광 고 주	성 명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광 고 물 설 치 장 소	()				
	광고물 종류		광고조명	타이머, 조광기 설치여부 ○, ×	수량	
	광 고 물 규 격(m)			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내 용					
시공업소	성 명		업 소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건 물 명		준 공 년 도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m)				
기 타						
「00시 00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00시 00정장 귀하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변경 –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1부. 옥외광고물 심의도서 1부.					수 수 료 없 음	

6.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1) 근 거 : 법 제9조, 제9조의2, 영 제36조, 시·도 조례 제25조

2) 시 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3) 점검자 : 지자체 또는 영 제38조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

4)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구분	대상	비고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 · 한변 길이 10m 이상인 것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 면적 1㎡ 이상인 것 	
공연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 · 한 변 길이 10m 이상인 것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 높이가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것(제외)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제외)
지주 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간판(제외)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 · 면적 30㎡ 이상인 것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하여 설치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항목의 모든 게시시설 	

5) 안전점검 처리절차(법 제3조, 영 제10조)



6)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영 제37조제1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 · 구조 · 규격 · 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 · 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 · 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 · 밀도 ·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 · 리벳 · 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흠,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 · 폭설 후, 폭발 · 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 · 미관 · 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7. 옥외광고사업의 관리(법 제11조)

1)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법 제11조제1항, 영 제4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44조)

기술능력	시설기준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 11개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	작업장 : 면적 제한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시설기준 적용 : 옥외광고를 제작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 ※ 작업장을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결격사유(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조회 공문] 요청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이수(법 제12조)
 - 교육이수 여부 : 교육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 제출서류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자격증사본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교육수료증
- ※ 사업자등록증 : 법정 구비서류는 아니나 등록 수수료, 면허세, 과태료 등 사업자등록 번호(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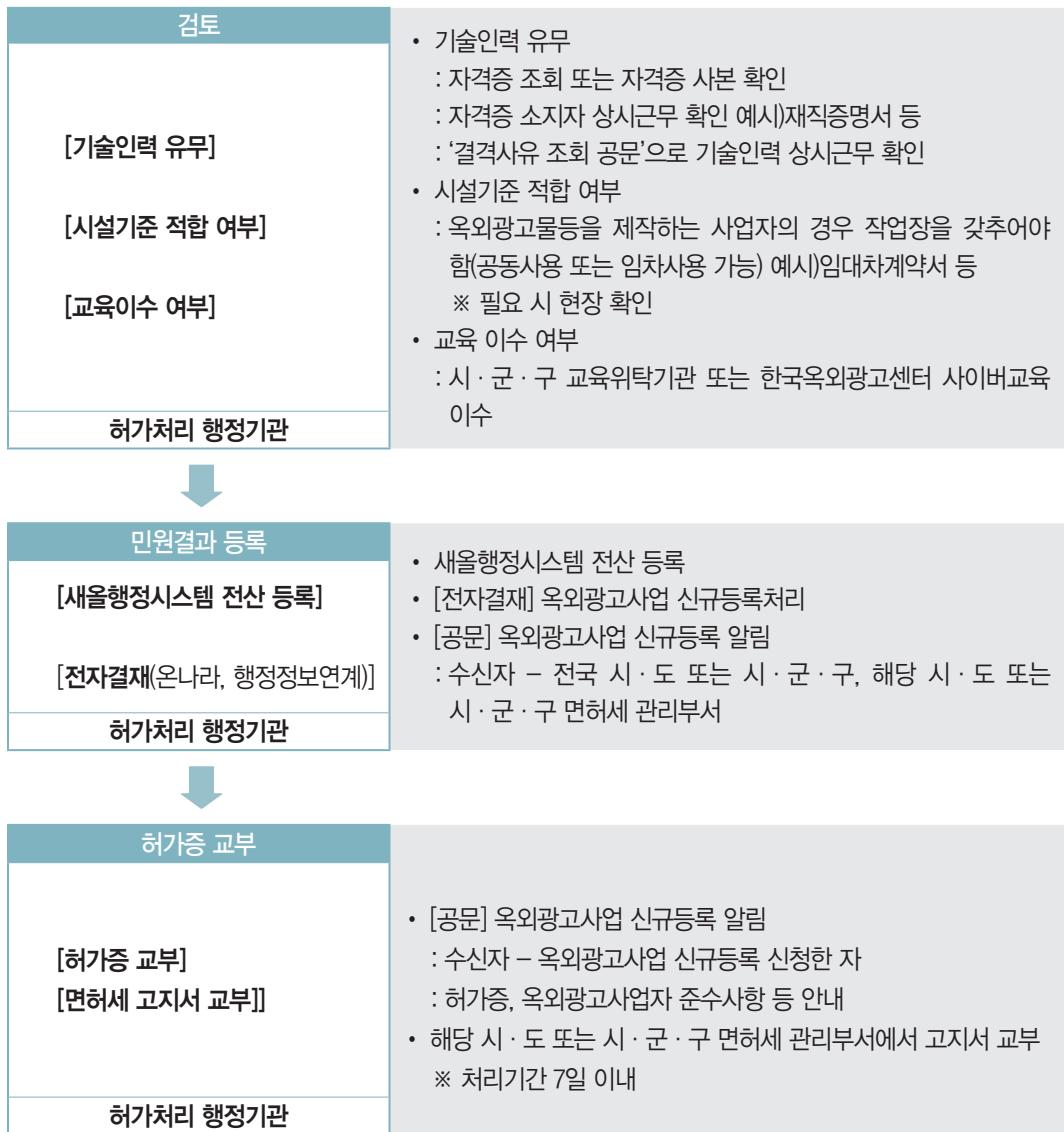
-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 처리절차

민원접수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자격증 사본 · 시설기준 확인 서류 · 교육수료증 <p>[등록 수수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군 · 구 조례
허가처리 행정기관
<p>결격사유 조회</p> <p>[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p> <p>[결격사유 조회 공문] 요청</p>
허가처리 행정기관



<p>[내부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p> <p>[새울행정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p> <p>※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p> <p>: 파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p> <p>: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확인(정보 조회 동의 시)</p> <p>[결격사유 조회 공문] 요청</p> <p>: 수신자 – 전국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p> <p>: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기술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의 상시근무 확인</p> <p>※ '결격사유 조회 공문' 수신 시 해당사항 있을 경우 반드시 회신하여야 함.</p>
허가처리 행정기관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 동의서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조회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

-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조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목적 :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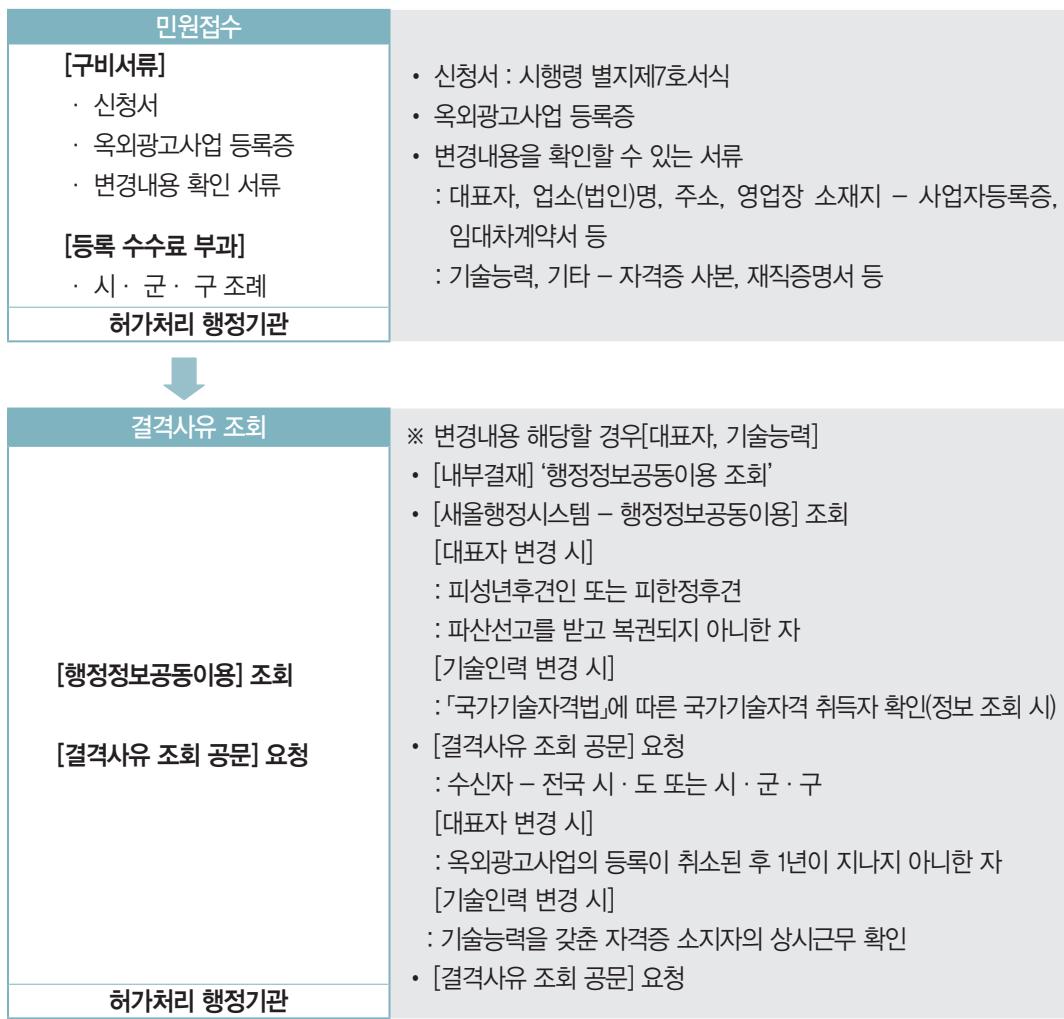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외광고사업 폐업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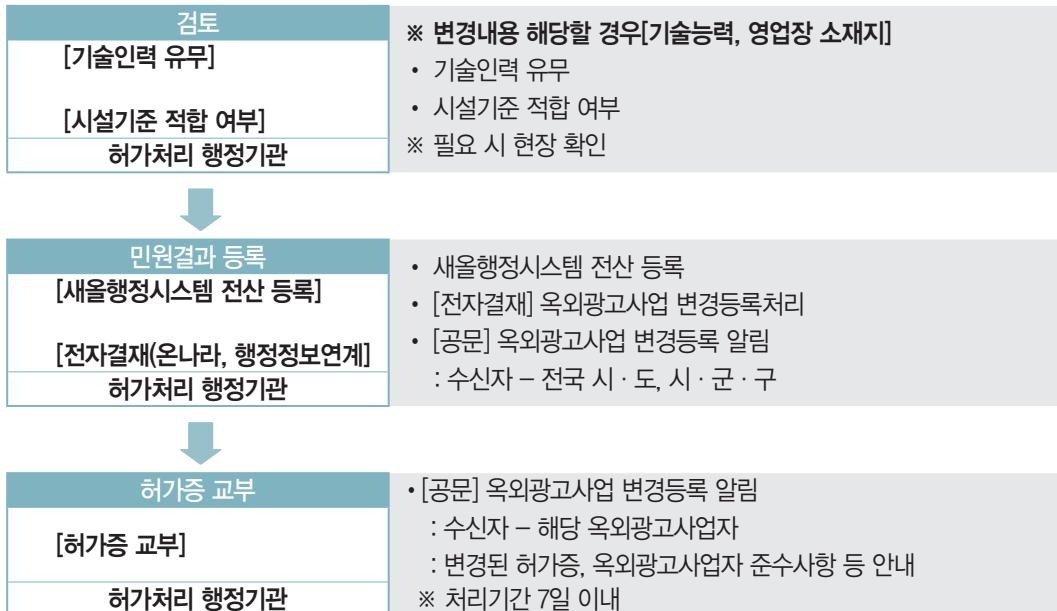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옥외광고사업자의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영 제45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변경내용 : 대표자, 업소(법인)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기존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2006.6.24)로부터 2년 이내 (2008.6.24)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2005.6.24.] [2004.12.23 일부 개정]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법률 제7246호, 2004.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 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휴·폐업 및 재개업(법 제11조제2항, 영 제47조)

- 대상 :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 제출서류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등록증

※ 폐업 신고 : 등록증 분실한 경우(신청서에 분실사유 작성)

재개업의 경우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정보조회 동의 시) : 서울행정시스템

통합 민원신청(폐업 신고) [시행령 제47조제2항]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 통합 신고 가능

: ①+② 또는 ③

① 폐업신고서[시행령 별지제7호서식],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

유의사항

법 제11조제4항 직권 말소 조항 2016.1.6 개정으로(삭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이후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장 소재지 등 거주가 불명한 경우라도 시장 등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법 제14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11조] 2016.1.6 개정 전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재발급 신청(영 제46조)

- 신청사유

· 등록증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시행령 별지제10호서식)

· 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5)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① 등록취소대상(법 제1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취소 처분대상 행위(제14조)

- 무허가(변경허가 포함)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무신고(변경신고 포함)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금지광고물 등(법 제5조)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③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법 제14, 영 제51조)

-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영 제51조의 별표7)

④ 영업정지등 처분내용 통보(시행령 제52조)

- 시장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⑤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시행령 제53조)

- 시장 등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 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청하여야 함.
-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요청을 한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⑥ 등록취소 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2호)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여야 함.

6)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① 단체의 설립 목적 업무 및 회원(법 제11조의 3)

- 단체의 설립목적(법 제11조의3제1항)

-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품위향상 도모

※ 단체는 법인으로 함(법 제11조의3제2항)

- 단체의 업무

-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회원의 자격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11조제1항)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영 제48조)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정관의 변경(법 제11조의3제6항, 민법 제42조제2항)

- 단체에 관하여 옥외광고물관련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정관의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 ※ 활동범위가 1개 시·도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민법 제42조제2항(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7)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법 제12조)

① 교육의 목적(법 제12조제1항)

- 시장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② 교육의 종류 등(법 제12조제2항, 영 제49조)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③ 교육의 실시(법 제12조제3항)

- 교육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경우

④ 교육의 위탁(법 제12조제4항, 영 제50조)

-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⑤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20조제2항)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 제55조)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 람

III

옥외광고 정비 업무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III. 옥외광고 정비 업무

1. 불법 광고물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법령에 따른 불법 광고물의 종류

① 미허가·미신고 광고물(법 제3조)

광고물 등은 법령이 정하는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 된다.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위반 광고물(법 제4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등에 표시나 설치가 금지·제한되는데 이를 어긴 경우가 해당 된다.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금지 광고물(법 제5조)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행산업 및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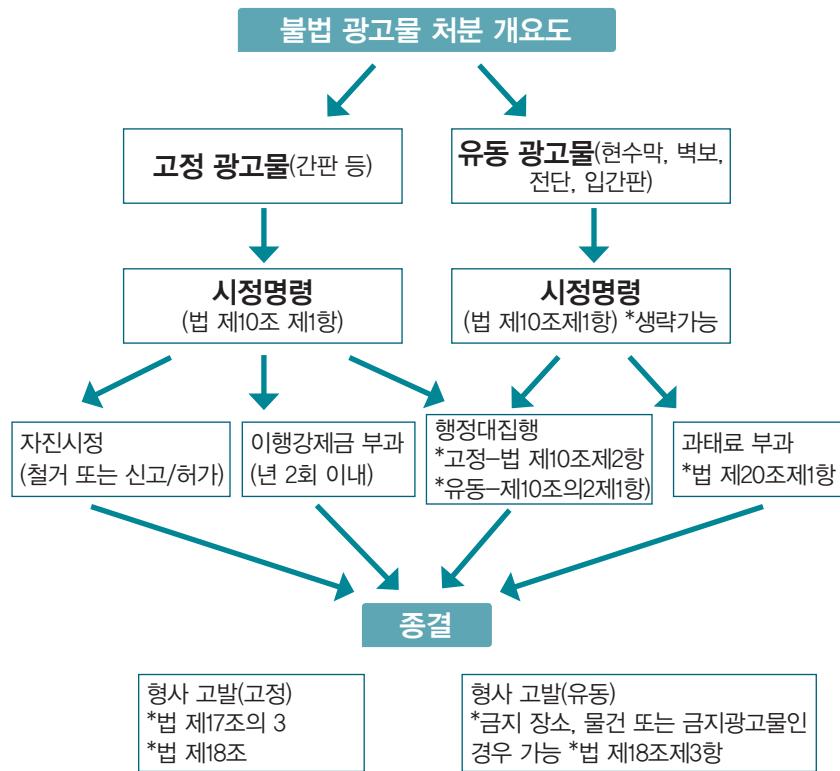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2) 형태에 따른 불법 광고물의 종류

- ① 고정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판이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스플레이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벽면·지면 등에 고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간판,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 ② 유동 광고물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지정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그림 5 불법광고물 처분(정비) 절차-위반 등에 대한 조치



2. 불법 광고물 처분(정비)

1) **시정명령**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관리자등에 대해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

① **대상 광고물** :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및 제5조(금지광고물 등)를 위반하거나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

② 명령 대상자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③ 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

- 행정대집행(법 제10조)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 2) : 추락 등 급박한 위협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 2) :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부과)
- ☞ 적용상 주의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과태료(법 제20조) 부과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철거·제거를 병행할 수 있으며 금지광고물(법 제5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광고물의 금지 지역·장소·물건(법 제4조1항)에 설치되었을 경우 별칙(제18조 제3항)에 따른 형사 처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불법 광고물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 입간판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안내팸플릿 배부, 계도장(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여러 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정비명령(「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 및 강제철거(「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과태료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의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 맞게 조치한다.

강제철거한 입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한다. 보관 시에는 시·군·구 게시판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고 광고물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가능하게 두어야 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광고물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입간판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 철거한 입간판은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시 과태료부과, 철거비용 징수가 가능하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과태료는 입간판의 연면적, 설치 위치, 전기 시설 여부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하되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과대상 광고주 인적사항 확보는 광고물에 전화번호가 있을시 통신사에 열람 요청하고(「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소 정보를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5조) 과태료부과 전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전기 시설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를 과태료 부과시 고지서에 동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가 법규 위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2)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불법현수막은 설치 즉시 광고효과를 누리게 되고, 설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다량의 현수막에 대하여 일일이 정비명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발 즉시 철거가 일반적이다. 철거한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 ☞ '설치 주체가 명확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즉시 철거 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구두, 유선, 공문 등으로 계도 및 정비명령하여 자진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하는 것이 후속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 유의사항 : 노상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른 광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 집회현수막, 종교행사 등 현수막).
- ☞ 참고사항: 집회현수막

집회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동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 실제 집회 중일 때 사용하는 집회현수막은 허가·신고없이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집회 중인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다든지 집회신고 한 장소라도 실제 집회 중이지 않을 때 설치한 경우라면 불법현수막이 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13-0524). 또한 동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신호기를 가린다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집회 중이더라도 단속 대상이다.

강제 철거한 현수막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폐기 처리한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연면적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하되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사항은 불법 입간판 과태료 부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벽보·전단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적발된 벽보·전단 광고주를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과태료는 벽보·전단의 장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하되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사항은 불법 입간판 과태료 부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4. 불법 광고물 정비 시책

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제거·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거보상원은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단속을 실시하므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기여한다. 시도 표준조례 제22조제4항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수거보상제 운영 근거를 두었다.

표 1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주소		00시 00구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급비	⑤ 수량	⑥ 신청금액	비고 (지급내역)	
	현수막	일반형	2,000원			1장 기준	
		족자형	1,000원			1장 기준	
	벽보	A3 이상 (사진有)	100원			1장 기준	
		A3 미만 (사진有)	50원			1장 기준	
		A3 이상 (사진無)	50원			1장 기준	
		A3 미만 (사진無)	30원			1장 기준	
		전단	30원			1장 기준	
		스티커 · 코팅	1,000원			1장 기준	
	주요수거 장소		00시 00구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인인	광고물 종류별		⑨ 수량	⑩ 지급 예정액	⑪ 담당자		
	현수막	일반형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자: 2019. . .		
		족자형					
	벽보	A3 이상 (사진有)					
		A3 미만 (사진有)					
		A3 이상 (사진無)					
		A3 미만 (사진無)					
		전단					
		스티커 · 코팅					
	합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00시 00구청장 귀하							

표 15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증빙 사진자료 서식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증빙 사진				
신청인		정비장소	00시 00구 동	
		정비일시	2019년 월 일 시	
		정비광고물 위치 및 사진	붙임	
연번	유형	현수막 게첨 위치도	정비 전 사진	정비 후 사진
1	족자형		날짜와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날짜와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2	족자형			
3	족자형			
4	족자형			
5	일반형			

2)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

명의도용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광고물은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매우 어렵다.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전화차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차단 시스템은 전화번호 정지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자동전화를 짧은 간격으로 지속 발송하여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전화번호 정지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금지광고물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전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안내전화를 발송할 수도 있다. 발송 대상은 정지 대상 광고물만이 아닌 모든 불법광고물이며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정도로 전화발송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불법 광고물 계도 안내 전화를 자동으로 보내는 것이며 차단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 셈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3)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하여 불법벽보 부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일련의 품질시험을 통과한 부착방지물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다.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

편 람

IV

옥외광고 행정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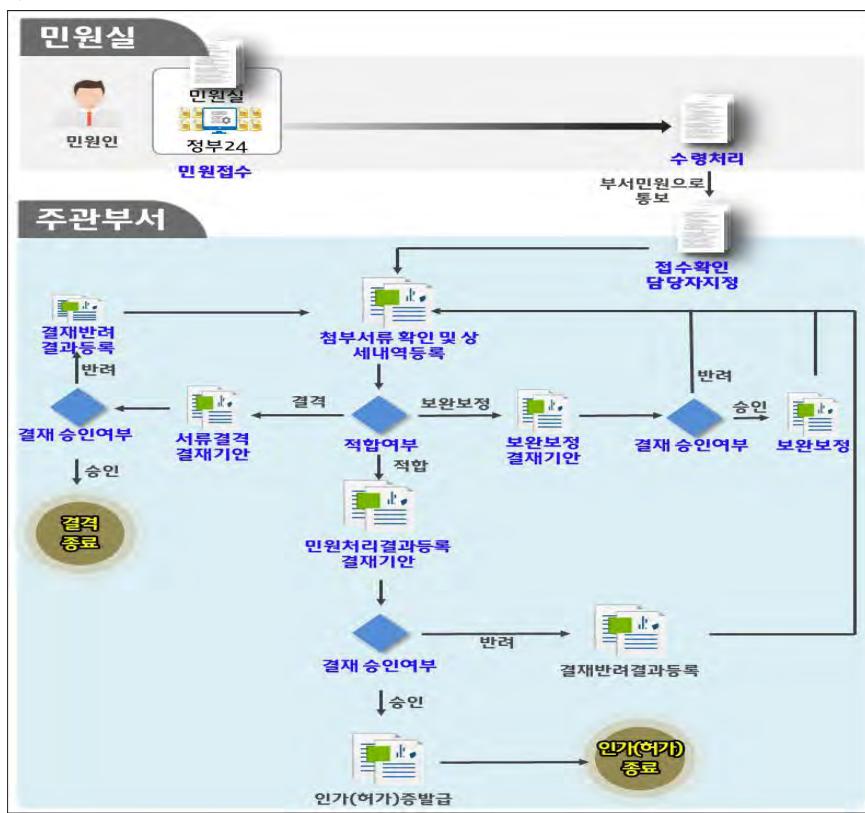
IV. 옥외광고 행정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1. 업무(민원)처리 절차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업무 및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인의 민원접수부터 시작된다. 민원실에서 수령 처리하여 부서민원으로 통보된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지정된 후, 담당자는 새울행정시스템의 ‘나의할일-받은민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의 첨부서류 확인 및 상세내역에 대한 확인과 등록절차를 거쳐 결재를 득한 후 ‘인가(허가)종료’ 또는 ‘결격종료’로 민원처리를 완료한다.

그림 6 옥외광고물관련 사업의 업무 및 민원처리 절차



2. 업무 따라하기

1) 업무 시작하기(새올행정시스템 접속)

□ 새울행정시스템 접속 (로그인>>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

새울행정시스템
제 무과 금내부09님
로그인 정보변경

나의 할일

• 직원검색 이름 직원검색 검색

• 업무 바로가기 업무 바로가기 추가

복무관리 시스템 관리 민원 의회 생산행정 민방위 법제 지역산업 복지 검사

전체업무보기 복무관리 시스템 관리 민원 회의 생산행정 민방위 법제 지역산업 복지 검사

지역산업

Quick Men

국가법령 표준문고 인서울 경 TOP 출장신청 연기신청 당국보고 소관부서 신규신청 당국질의자 신규개시판 계시설계부서 업무운영자 휴대폰리자

나의 할일

• 받은 민원 0 건
• 부서 민원 0 건
• 연계 접수 민원 10/20 건
• 예고 등록 90/60 건
• 지시사항 0 건
• 상당 민원 0 건
• 시민님 서명구 0 건
• 시민님 서명보내기 0 건
• 당직 민원 0/0 건
• 민원설의 0/0 건

전자결재

• 결재 대기 0 건
• 결재 대기 0 건
• 결재 대기 0 건

복무결재

• 결재 대기 중 0 건

복무결재-공람

• 공タル된 기간 0 건

오늘의 메뉴

2019.8.16 (금)

새울식당 가람식당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행사일정

오늘의 행사일정이

포상현황

포상번호 포상구분 포상종별 포상일자 성명 처리상태

	내부	상장	2019-07-15	김관리01	접수 중
	내부	표창장	2019-07-15	테스트	접수 중
	내부	상장	2019-06-04	김도리	접수 중

오늘의 메뉴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새울식당 가람식당 디카페 맛집 경심 날님 원도우

간부재상현황

• 부군수
• 보건소장
• 행정자치...
• 교육감
• 창조경제...
• 안전도시...
• 결재가
• 결재가
• 결재가
• 결재가
• 휴가중
• 상담중

새울행정시스템
제 무과 금내부09님
로그인 정보변경

나의 할일

• 직원검색 이름 직원검색 검색

• 업무 바로가기 업무 바로가기 추가

복무관리 시스템 관리 민원 의회 생산행정 민방위 법제 지역산업 복지 검사

제너리자사업 관리 상공업관리 노사자율관리 경보통신공사업 관리 공동 관리 보고통계 관리 행정사업 관리

전체업무보기

새울행정시스템
제 무과 금내부09님
로그인 정보변경

나의 할일

• 직원검색 이름 직원검색 검색

• 업무 바로가기 업무 바로가기 추가

복무관리 시스템 관리 민원 의회 생산행정 민방위 법제 지역산업 복지 검사

지역산업

지역산업

Local Industry

• 공지사항

No. 업무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지역산업	○ ○	icwbd4	2018-12-24
---	------	-----	--------	------------

프로세스센터

▶ 개요

- 새울행정정보시스템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서 지역산업을 선택한다.
 - 지역산업 메뉴 중 상공업관리 선택 후 왼쪽메뉴의 옥외광고물(업)을 선택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심사 및 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민원접수번호: 2018-4640000-0002707 접수일자: 2018-11-19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나죽에
 민원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GNG 병원 빌딩 (삼성동)

허가(신고)번호:

사업자 정보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사무소 소재지(자
나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GNG 병원 빌딩 (

광고자 정보

광고자구분: 속외광고업 등록번호: 조회
 성명(법인명): 나죽에 생년월일: 0000-00-00 주민정보조회 전화번호:
 광고주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GNG 병원 빌딩 (삼성동) 주소검색
 광고주주소(자세): 주소검색
 영업장주소: (도로명) 주소검색
 영업장주소(지번): 주소검색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 관리자 정보

광고물관리자(법인)명: 생년월일: 주민정보조회
 업소명: 전화번호:
 광고물관리자 주소(도로명): 주소검색
 광고물관리자 주소(지번): 주소검색
 광고자와 동일인

시공업소 정보

시공업소등록번호: 관내조회 주민정보조회 초기화
 대표자(법인)명: 생년월일: 주민정보조회
 계시사 공업소명: 전화번호:
 시공업소주소(도로명): 주소검색
 시공업소주소(지번): 주소검색
 광고자와 동일인 광고물 관리자와 동일인

옥외광고물 관련정보

허가(신고)구분: 허가(신고)번호: 실명제 관리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장소(도로명): 표시장
 ① **광고자정보 저장**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명 첨부서류삭제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② 추가, 수정, 삭제
 1 사용승락 증명서류 --선택--
 2 심의관련서류 --선택--
 3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선택--
 4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선택--
 5 관공문서인 확인서류 --선택--
 ③ **서류설사저장**

④ 처리부서: 영상정보파: 결재: 담당자: 김관리01: 결재
 ⑤ 보완보정: 민원결과: 결재: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⑥ 처리: 허가증인쇄: 저작
 ⑦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홍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광고자정보, 광고물관리자정보, 시공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광고자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광고자 정보를 저장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추가한다.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8 4640000 0002707	민원유형	허가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민원인	나목례
전화번호	주소(도로명)	주소(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 826, GNG 병원 빌딩 (삼성동)
핸드폰	건별수수료	수수료합계	0
접수자	접수일시	처리기한	2018-11-19 09:00 2018-11-23

■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가판장결정일	결정내

■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 관리 01 ADM01	처리책임자	김 관리 01 ADM01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3:57	
불기반례시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담기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 제목 민원번호 201846400000002707번 민원 결재입니다.

기안 본문

민원 접수번호 : 201846400000002707
 결 과 : 해 결
 광고물 종류 : 벽면이용간판(세로형)
 광고물 규격(면) : 6*1, 높이:6(면)
 광고물 수량 : 1
 광고내용(표시변경안) : 삼원광고
 표시장소(도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70 (도원동, 도원동삼성래미안)
 표시장소(지번)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표시기간 : 20191002 ~ 20221001
 광고자 이름 : 나옥에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외부강의 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미동합의서처리결과	기안문본문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 설계심사의견(적합)	1. 민원 접수번호 -2018464000000013(2018.11.02) 호 와 관련입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정보통신공사 학공전설계도확인	기안문본문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민)	민원구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템플릿 등록 테스트	템플릿 등록 테스트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C:\Temp\2019년 10월 2일 -a0-201846400000002707_옥외광고 113,204

기안 첨부

수신자 ID : ADMUII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서원번호
 * 온나라 시스템 – 새울 로그인 ID로 자동 설정, 변경불가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13,204 /7Mbytes

③ 전송 종료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등록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출력)

▶ 처리절차

- ① **회가증민색**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② 인가(허가)증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 접수번호 2018-46400000-0002707 **접수일자** 2018-11-19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나목에

민원등록번호 00000000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GNG 병원 벌당 (삼성동)

허가(신고)번호

사업자 정보

광고자 정보

광고물 관리자 정보

시공업소 정보

옥외광고물 관리정보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담당자** 김 관리 01 **처리** 허가증인쇄 **저장**

보완보정 민원결과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처리** 허가증인쇄 **저장**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홍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광고자정보, 광고물관리자정보, 시공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광고자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광고자 정보를 저장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추가한다.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8 4540000 0002707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민원유형	허가	
민원인	나목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 626, GNG 병원 빌딩 (삼성동)	
전화번호		주소(지번)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 관리 01	수수료합계	0	
	접수일시	2018-11-19 03:00	처리기한	2018-11-23
■ 단계별 결정사항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1"/>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1"/>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1"/>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1"/>	결정내		
■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 관리 01 ADM01	처리책임자	김 관리 01 ADM01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3:57	
불가반려사				
처리대안				
의신청고지여부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radio"/>	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small>*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small>				
<input type="button" value="전자결재 전송내역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일괄결재저장"/> <input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10px;" type="button" value="전자결재"/>		①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②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필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출력)

▶ 처리 방법

- ① **신고증민쇄**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② 인가(허가)증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신청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2017-4640000-0002258 접수일자 2017-08-29 행정처분목록 도움말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이민원 민원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허가(신고)번호 2007-4660067-09-2-02226 조회 ①

사업자 정보

일련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도로명)	사무소소자
090629	이영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

※ 옥외광고물 조회 결과에 철거 광고물이 포함될 수 있음 ② 표시기간연장

광고자 정보

광고자구분	광고주	광고주
성명(법인명)	이영성	이영성
생년월일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주 주소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영업장 주소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사업자번호		

광고물 관리자 정보

광고물관리자 (법인)명	이영성	이영성
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전화번호		
광고물 관리자 주소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시공업소 정보

시공업소등록번호		초기화
대표자(법인)명	이영성	이영성
개시시공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전화번호		
시공업소 주소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용승락 증명서류	적합	2018-07-05	③ 서류심사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설치장소주변의원색사진	적합	2018-07-05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검색 담당자 김관리자 검색 ④

보완보정 민원결과 ⑤ 정상처리 ⑥ 처리 허가증인쇄 저장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홍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정보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정보를 조회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표시기간연장**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한다.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 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7 4640000 0002258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민원유형	허가	
민원인	이민원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전화번호		주소(지번)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 관리자	수수료합계	0	
	접수일시	2017-08-29 10:42	처리기한	2017-09-05

■ 단계별결정사항

현자조사일	조사결과
민원실무개회일	개회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회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

■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 관리자 ADM01	처리책임자	김 관리 01 ADM01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5:32	
불가방역사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예 아니도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닫기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 제 목 민원번호 201746400000002258번 민원 결재입니다.

기안 본문 민원 접수번호 : 201746400000002258
결 과 : 해 결

기안 본문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이동합의서처리결과	기안문본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심사의견(적합)	□ □ 1. 민원접수번호-2018464000000013(2018.11.02) 호와 관련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확인	기안문본문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민)	민원구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템플릿 등록 테스트	템플릿 등록 테스트

기안 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추가
<input type="checkbox"/>	C:\Temp\2019년 10월 2일 -a0-옥외광고물등표시기안문.pdf	112,854	삭제

수신자 ID ADM01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용번호
수신자 ID 안내 * 온나라 시스템 - 새울 로그인 ID로 자동 설정, 변경불가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③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12,854 /7Mbytes 전송 종료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출력)

▶ 처리 방법

- ① **회가족민생**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② 인가(허가)증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연장신고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신고 신청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2017-4640000-0002258 접수일자: 2017-08-29 행정처분목록: 도움말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이민원

민원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출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허가(신고)번호: 2007-4660067-09-2-02226 조회 (1)

사업자 정보

일련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도로명)	사무소소자
090629	이영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

※ 옥외광고물 조회 결과에 철거 광고물이 포함될 수 있음 (2) 표시기간연장

광고자 정보

광고자구분	광고주	광고주
설명(법인명): 이영설	이영설	
생년월일:		주민정보조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주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검색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검색
영업장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검색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검색
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사업자번호:		

광고물 관리자 정보

광고물관리자 (법인)명	이영설	이영설
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주민정보조회
전화번호:		
광고물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검색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검색
광고자와 동일인		

시공업소 정보

시공업소등록번호	대표자(법인)명	대표자(법인)명
	이영설	이영설
개시시공업소명:	새한광고	새한광고
전화번호:		주민정보조회
시공업소 (도로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59 (중노송동)	검색
(지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번지 11호	검색
광고자와 동일인		광고물관리자와 동일인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작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용승락 증명서류	적합	2018-07-0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설치장소주변의원색사진	적합	2018-07-05	

(3)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 검색 | 담당자: 김관리01 | 검색 (4)

보안보정 | 민원결과 | 정상처리 | 보안/보정 | 반려 | 처리 | 신고증인쇄 | 저장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흥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신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정보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정보를 조회한다.
- ②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표시기간연장**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한다.
- ③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 내역을 저장한다.
- ④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⑤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⑥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신고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8 4640000 0003092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신고	민원유형	허가	
민원인	김길길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Tower) (상암동)	
전화번호	01024563310	주소(지번)		
핸드폰	01024563310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 관리 01	수수료합계	0	
	접수일자	2018-12-12 14:36	처리기한	2018-12-17

단계별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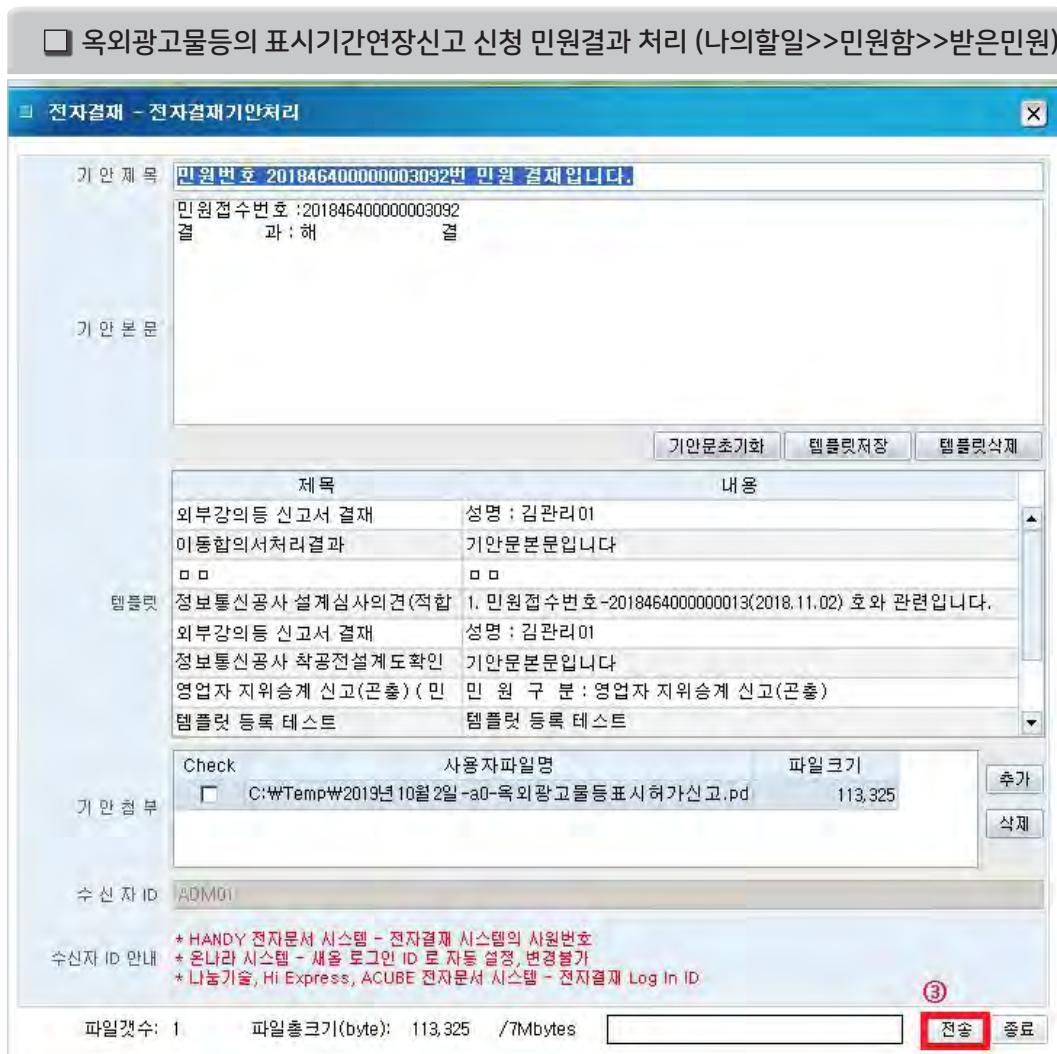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조사결과	
민원설무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결정내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 관리 01	ADM01	처리책임자	김 관리 01	ADM01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원결일자	2019-10-02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15:41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①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증 출력)

■ 지역산업 인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관인 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용관인 <input type="radio"/> 사무용관인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인허가번호 <input type="radio"/> 인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처리 <input type="radio"/> 미처리
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시장 <input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처리부서명	가로 교통과
담당자명	김지역 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통이사한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 처리 방법

- ① **신고증민쇄**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② 신고증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6)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신청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 2019-4640000-0000296 접수일자 : 2019-01-28
민원인구분 : 개인 민원인명 : 이지노지
민원등록번호 : 000000000000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철드로 30다길 37 (설산동, 슈펜하임 설산)
허가(신고)번호 : 2002-3000093-09-1-00098 [조회]

사업자 정보

일련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일련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091114	김혜성	02-738-7259	서울특별시	091114	김혜성
					02-738-7259

광고자 정보

광고자구분	광고주	광고주
성명(법인명)	김혜성	김혜성
생년월일	1953-11-06	[조회] 주민정보조회
민원등록번호		
전화번호	02-738-7259	02-7-3872-59
광고주 주소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영업장 주소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업소명	한방포크	한방포크
사업자번호		

광고를 관리자 정보

광고물관리자(법인)명	김혜성	김혜성
생년월일	1953-11-06	[조회] 주민정보조회
업소명	한방포크	한방포크
전화번호	02-738-7259	02-7-3872-59
광고물 관리자 주소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시공업소 정보

시공업소등록번호		[초기화]
대표자(법인)명	김혜성	김혜성
개시시공업소명	한방포크	한방포크
생년월일	1953-11-06	[조회] 주민정보조회
전화번호	02-738-7259	02-7-3872-59
시공업소 주소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길 23 (당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옥외광고물 관련정보

허가(신고)번호	대표허가(신고)번호	일련번호	실명	허가(신고)구분	설명제관리번호	광고물종류	표시장소(도
2002-3000093-09-1-0009	2002-3000093-09-1-0009	001		허가		출판간판	서울특별시 종로

첨부여부

첨부서류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1 사용승락 증명서류	적합	2019-09-03	
2 심의관련서류	적합	2019-09-03	
3 건물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	--선택--		
4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선택--		
5 허가증(신고)서류	--선택--		

처리부서 영상정보판

처리자 김 관리01

보완보정 민원결과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처리 허가증인쇄 저장

③ 서류심사저장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흥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정보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정보를 조회한다.
- ②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변경정보를 수정 입력한다.
- ③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④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⑤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⑥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9 4640000 0000286	민원유형	허가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0다길 37 (성산동, 슈펜하임 성산)
민원인	이자노지	주소(지번)	
전화번호		건별수수료	0
핸드폰		수수료합계	0
접수자	김 관리 01	접수일시	2019-01-28 11:06
		처리기한	2019-02-07
■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1"/>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1"/>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1"/>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1"/>	결정내	
■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 관리 01 ADM01	처리책임자	김 관리 01 ADM01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5:57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담기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 제 목 민원번호 201946400000000236번 민원 결재입니다.

기안 접수번호 : 201946400000000236
결 과 : 해 결
 광고물종류 : 둘출간판
 광고물규격(면) : 0.7*2.6(면)
 광고물수량 : 1
 광고내용(표시변경안) : 한방포크
 표시장소(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길 23 (당주동)
 표시장소(지번)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표시기간 : 20021122 ~ 20051121
 광고자 이름 : 김혜성

기안 본문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이동합의서처리결과	기안문본문입니다
□□	□□
템플릿 정보통신공사 설계심사의견(적합)	1. 민원접수번호 -2018464000000013(2018.11.02) 호와 관련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정보통신공사 학공전설계도 확인	기안문본문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민)	민원구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템플릿 등록 테스트	템플릿 등록 테스트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C:\Temp\2019년 10월 2일 -a0-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pdf 112,689

기안 첨부

수신자 ID ADM01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서원번호
 * 온나라 시스템 – 새울 로그인 ID로 자동 설정, 변경불가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12,689 /7Mbytes 전송 종료 ③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출력)

▶ 처리 방법

- ① **금가증민색**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② 인가(허가)증 출력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7)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신청

□ 옥외광고물안전점검신청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신청

민원접수번호: 2016-4640000-0001471 접수일자: 2016-07-14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01**

민원등록번호: 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산3길 22 (동완산동)

■ 옥외광고물 안전도점검정보

안전도검사 이력기번호: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안전점검

안전도검사 종류: 김한전

안전도검사자 명 (법인명): 2016-08-22

안전도검사 일자: 안전도검사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안전도검사자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8 (성산동, 서울가좌행복주택)

안전도검사자주소 (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34번지 2호 서울가좌행복주택

주소검색

■ 옥외광고물 관련 세부정보

민허가번호: 조회 ①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

허가(신고)번호	광고물종류	광고주명	표시장소(도로명)	표시장소
----------	-------	------	-----------	------

■ 광고자 정보

광고자구분: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전화번호:

설명(법인명):

광고주주소 (도로명):

광고주주소 (지번):

영업장주소 (도로명):

영업장주소 (지번):

업소명:

■ 광고물 관리자 정보

광고물관리자:

업소명:

전화번호:

광고물관리자 주소(도로명):

광고물관리자 주소(지번):

■ 시공업소 정보

시공업소등록번호:

대표자(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시사공업소명: 전화번호:

시공업소주소(도로명):

시공업소주소(지번):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설계도서	적합	2017-02-14	

②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담당자: 김관리01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처리 증명서인쇄 제정

④ 보완보정 민원결과 ⑤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처리 증명서인쇄 제정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홍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신청을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정보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정보를 조회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안전점검 합격여부를 수정 입력한다.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물안전점검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5 4540000 0003253	민원유형	검사
민원명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민원유형	검사
민원인	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동, 도렴빌딩)
전화번호		주소(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관리미	수수료합계	0
		접수일시	2015-11-30 11:16
		처리기한	2015-12-07

단계별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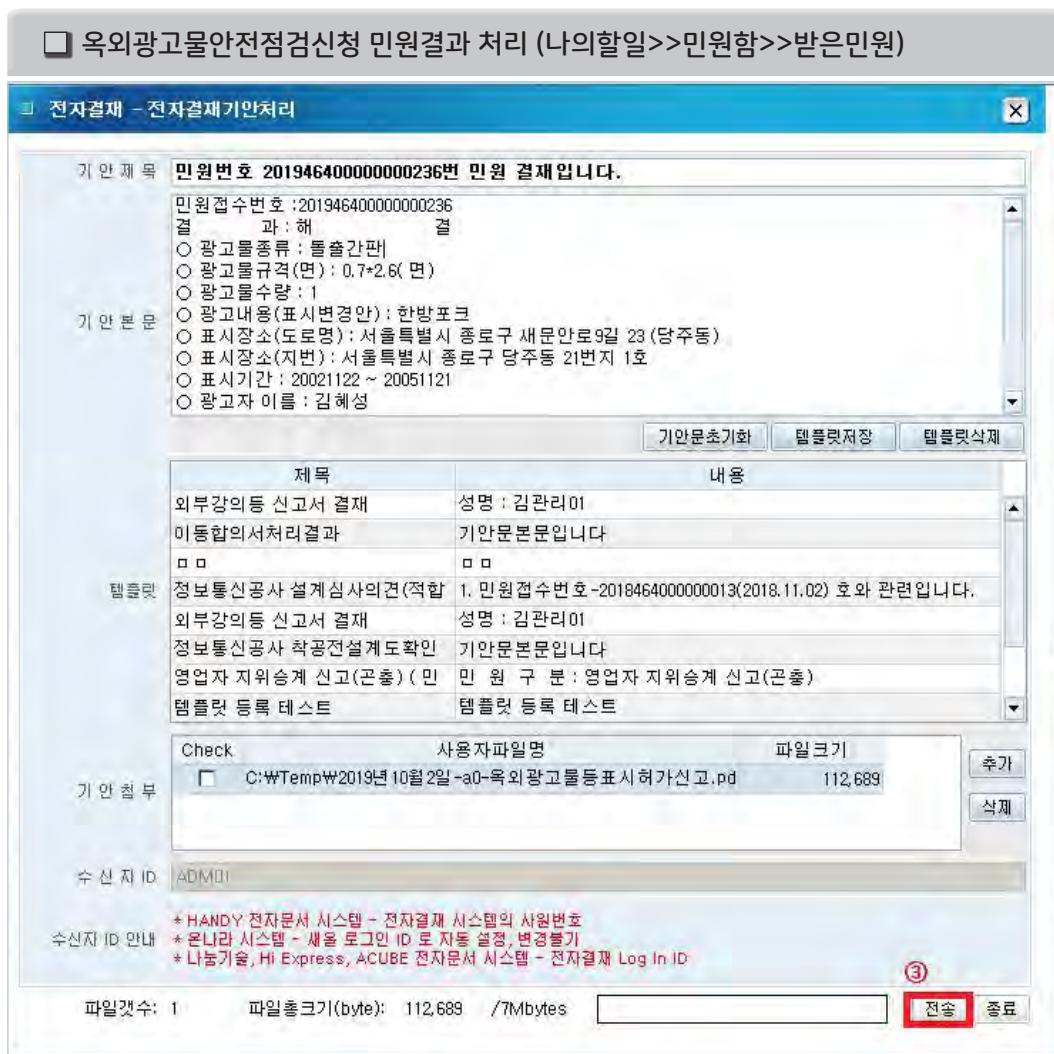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조사결과"/>
민원설무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결정내"/>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관리 01 ADM01	처리책임자	김관리 04 ADM04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7:38	
불가반려사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 ② 닫기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출력)

■ 지역산업 안전기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 출력	관인 출력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 출력인 <input type="radio"/> 사무용 관인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인허가번호 <input type="radio"/> 인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처리 <input type="radio"/> 미 처리	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시장 <input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 출력		
처리부서명	가로교통과		
담당자명	김 지역 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특이사항			

제 2011-4840279-20-1-00001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	성 명	취업단	생년월일	1911년11월11일
청	업소명	점단기획		
자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9번길 9 (광명동 상도주택 202호)		
부	광고물등 제작 및 판매 번호	2011년01월22일 2011-48 50026-09-1-00001	광고물등의 종류	● 종류
기	표지위치 또는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95호 1동 5번 상호주체 광작	광고물등의 규격	0.8x0.8
관	대표자	취임단	신고번호	2011062900001
인	업소명	점단기획		
자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번지 95호 1동 5번 상호주체 202호		
김	성 명	김 지역	검사일	2011년10월14일
길	소 속			
나	주 소			
가	결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관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 방법

- ① **증명서민체**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② 증명서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8)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 첨부서류 확인 및 상세내역 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옥외광고업신규등록휴폐업재개신고

민원접수번호: 2014-4640000-0000084 접수일자: 2014-02-17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국**

민원등록번호: 111111*****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호행로 11

민원구분: 신규 휴폐업재개신고 등록일자: 2017-11-08 관리번호:

등록번호: 2018-4640280-08-5-00001

옥외광고업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111	20171108	111	111

추가 수정 삭제

옥외광고업 업소정보

업소명: 1111 영업장소제자 (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 (성암동) [검색](#)
 영업장소제자 (지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8번지 13호

사무실면적: m² 작업장면적: m² 종업원 수: 2 명

기술능력

광고도장가능사	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가능사	명	전기공사기사	명
전기공사산업기사	명	옥외광고사(2급이상)	명	기타	명

성명 자격증번호 자격증종류

기술인적사항

영업내용

기타

옥외광고업 휴·폐업·재개업 정보

휴·폐업·재개업 구분: 전체 휴업일자: ~
 폐업일자: 재개업일자:

휴·폐업사유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자격증사본	적합	2016-10-11	
-------------------------------------	---	-------	----	------------	--

①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결재 담당자: 김관리01

③ 보완보정: ④ 처리: ② 결재: ⑤ 등록증인쇄: ⑥ 저장:

국세청폐업신청내역 C 정상처리 C 보완/보정 C 반려

▶ 개요

-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민원인이 신청하여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정보, 옥외광고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등록한다.

▶ 처리절차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민원처리 결과등록 및 결재기안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9-46490000-0000236	민원유형	허가
민원명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민원인	이자노자
전화번호	주소(도로명)	주소(지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0나길 37 (성산동, 슈랜하임 성산)
핸드폰	건별수수료	수수료합계	0
접수자	접수일시	처리기한	2019-01-28 11:06 ~ 2019-02-07

단계별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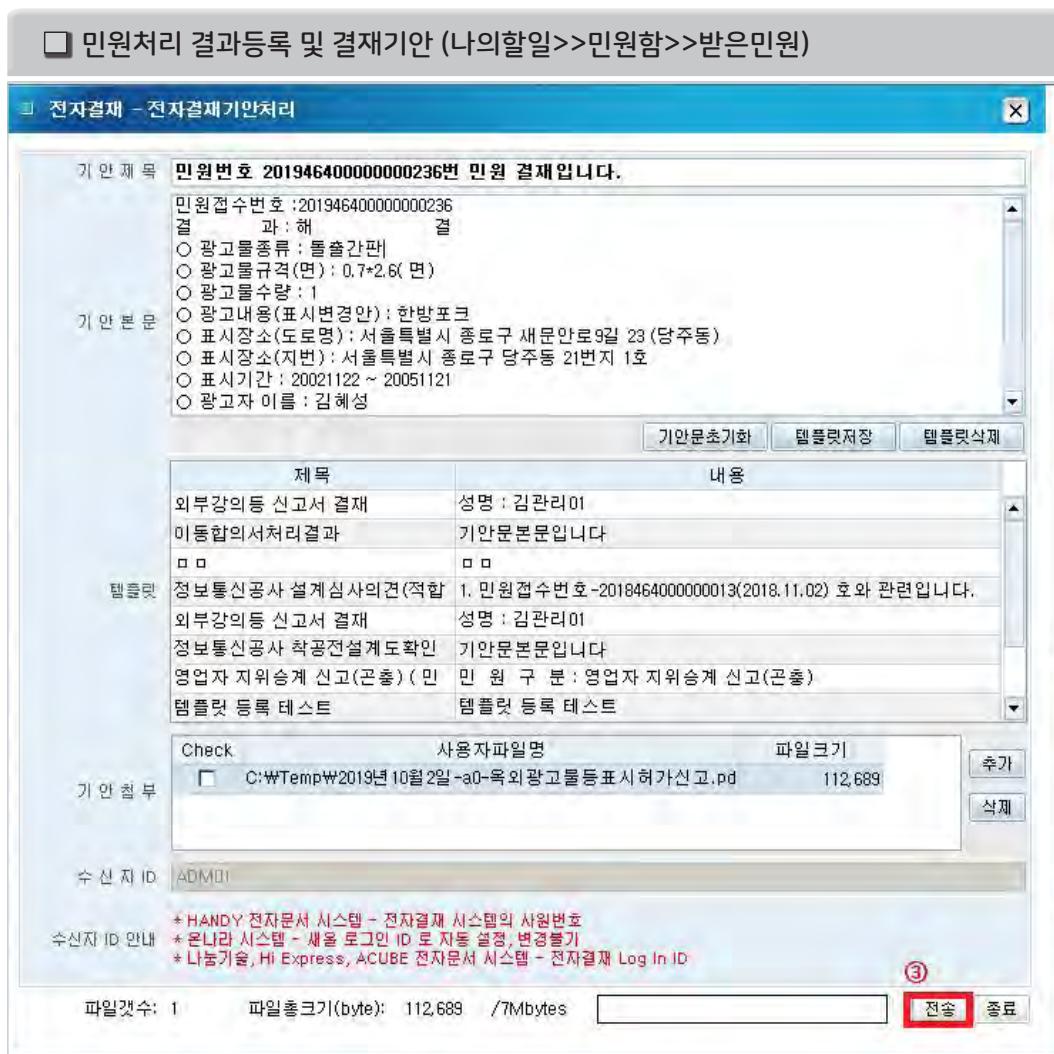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관리01	처리책임자	김관리01	처리일자	2019-10-02 15:57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5:57		
불기반례시					
처리대안					
이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이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닫기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업등록증 출력)

■ 지역산업 민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민허가번호 <input type="radio"/> 인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type="radio"/> 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미처리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type="radio"/> 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시장 <input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처리부서명	가로 교통과
담당자명	김자연 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선택"/>
특이사항	

제 2016-4650000-08-5-00004 호

지침부서명	금상금
담당부서명	회계원 12
전화번호	02-2076-5800

옥 외 광 고 사 业 등 륙 증

1. 상영(대표자) : 홍길동

2. 상영출일(법인등록번호) : 2011년11월11일

3. 주소 :

4. 연소영 : 111

5.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작업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1 (효자동3가, 예명원동)

6. 영업내용 :

7. 기간 :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전 주 시 완 산 구 구 청

태스트
관 인

9)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2019-4640000-0001745 접수일자: 2019-06-05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원강조

민원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203길 7, 성산 대홍사 (길동)

등록번호: 조회 관리번호:

변경일자: 일련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번호

구분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번호

대표자: 추가 수정 삭제

성명 자격증번호 자격

기술인적사항: 추가 수정 삭제

업소명:

영업장소제자 (도로명):

영업장소제자 (지번):

사무실면적: m²

작업장면적: m²

종업원 수: 명

광고도장기능사: 명

전기공사산업기사: 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명

옥외광고사(2급이상): 명

전기공사기사: 명

기타: 명

변경사유: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 1 옥외광고업등록증 --선택-- 1

①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 검색 | 담당자: 김관리01 | 검색 | ②

보완보정 | 민원결과 | ③ 정상처리 | ④ 보완/보정 | ⑤ 반려 | ⑥ 처리 | 허가증인쇄 | 저장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흥길동이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업정보, 대표자정보, 옥외광고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등록한다.

▶ 처리절차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5 4640000 0003253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민원유형	검사	
민원인	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동, 도렴빌딩)	
전화번호		주소(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관리01	접수일시	2015-11-30 11:16	
		수수료합계	0	
		처리기한	2015-12-07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조사결과		
민원설무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결정내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관리01 ADM01	처리책임자	김관리04 ADM04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7:38	
불가반려사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small>*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small>				
<input type="button" value="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일괄결재저장"/> <input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10px;" type="button" value="전자결재"/> ②		①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닫기		

□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 제목 민원 번호 201946400000000236번 민원 결재입니다.

기안 본문

민원 접수번호 : 201946400000000236
 결 과 : 해 결
 광고물 종류 : 틀출간판
 광고물 규격(면) : 0.7~2.6(면)
 광고물 수량 : 1
 광고내용(표시변경안) : 한방포크
 표시장소(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길 23 (당주동)
 표시장소(지번)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표시기간 : 20021122 ~ 20051121
 광고자 이름 : 김혜성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미동합의서처리결과	기안문본문입니다
□□	□□
템플릿 정보통신공사 설계심사의견(적합)	1. 민원 접수번호 -2018464000000013(2018.11.02) 호와 관련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정보통신공사 학공전설계도 확인	기안문본문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민)	민원 구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템플릿 등록 테스트	템플릿 등록 테스트

기안 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input type="checkbox"/>	C:\Temp\2019년 10월 2일 -a0-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pdf	112,689

수신자 ID : ADM01

수신자 ID 안내 :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용번호
 * 온나라 시스템 - 새울 로그인 ID로 자동 설정, 변경불가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12,689 / 7Mbytes

③

전송 종료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업등록증 출력)

■ 지역산업 민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민허가번호 <input type="radio"/> 인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type="radio"/> 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미처리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type="radio"/> 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시장 <input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처리부서명	가로 교통과
담당자명	김자연 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선택"/>
특이사항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제 2016-4650000-08-5-00004 호

지침부서명	금상금
담당자명	김자연 12
전화번호	02-2076-5800

옥 외 광 고 사 业 등 륙 증

1. 상영(대표자) : 홍길동

2. 상영출일(법인등록번호) : 2011년11월11일

3. 주소 :

4. 연소영 : 111

5.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작업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1 (효자동3가, 예명원동)

6. 영업내용 :

7. 기간 :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전 주 시 완 산 구 구 청

태스트
판 인

10)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업 휴폐업재개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접수번호 2014-4640000-0000084 접수일자 2014-02-17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국**

민원등록번호 111111*****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호행로 11

민원구분 신규 휴폐업재개신고 등록일자 2017-11-08

등록번호 2018-4640280-08-5-00001 조회 관리번호

옥외광고업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111	20171108	111	111

추가 수정 삭제

옥외광고업 업소정보

업소명 1111 영업장소제자 (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 (성암동) 검색

영업장소제자 (지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8번지 13호

사무실면적 m² 작업장면적 m² 종업원 수 2 명

기술능력

광고도장기능사	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명	전기공사기사	명
전기공사산업기사	명	옥외광고사(2급이상)	명	기타	명

성명 자격증번호 자격증종류

기술인적사항

영업내용

기타

옥외광고업 휴·폐업·재개업 정보

휴·폐업·재개업구분 전체 휴업일자 ~

폐업일자 재개업일자

휴·폐업사유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명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1 자격증사본 적합 2016-10-11

① 서류심사저장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접속 담당자 김관리01

③ 보완보정 민원결과 ④ 처리 등록증인쇄 저장

국세청폐업신청내역 C 정상처리 C 보완/보정 C 반려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홍길동이 신청하여 휴.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정보, 옥외광고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등록한다.

▶ 처리절차

-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사업 휴폐업재개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0 4640000 00000296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민원유형	허가
민원인	미지노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0다길 37 (성산동, 슈펜하임 성산)
전화번호		주소(지번)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관리01	접수일시	2019-01-28 11:06
		수수료합계	0
		처리기한	2019-02-07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개회결과
기관장결정일	결정내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관리01 ADM01	처리책임자	김관리01 ADM01	검색
처리결과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5:57	
불가반려사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닫기

□ 옥외광고사업 휴폐업자개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 전자결재 - 전자결재기안처리

기안 제목 민원 번호 201946400000000236번 민원 결재입니다.

기안 본문

민원 접수번호 : 201946400000000236
 결 과 : 해 결
 광고물 종류 : 틀출간판
 광고물 규격(면) : 0.7~2.6(면)
 광고물 수량 : 1
 광고내용(표시변경안) : 한방포크
 표시장소(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길 23 (당주동)
 표시장소(지번)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1번지 1호
 표시기간 : 20021122 ~ 20051121
 광고자 이름 : 김혜성

기안문초기화 템플릿저장 템플릿삭제

제목	내용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미동합의서처리결과	기안문본문입니다
□□	□□
템플릿 정보통신공사 설계심사의견(적합)	1. 민원 접수번호 -2018464000000013(2018.11.02) 호 와 관련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결재	성명 : 김관리01
정보통신공사 학공전설계도 확인	기안문본문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온출) (민)	민원 구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온출)
템플릿 등록 테스트	템플릿 등록 테스트

기안 첨부

Check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추가
<input type="checkbox"/>	C:\WTemp\2019년 10월 2일 -a0-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pdf	112,689	삭제

수신자 ID : ADM01

* HANDY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용번호
 * 온나라 시스템 - 새울 로그인 ID로 자동 설정, 변경불가
 * 나눔기술, Hi Express, ACUBE 전자문서 시스템 - 전자결재 Log In ID

파일갯수: 1 파일총크기(byte): 112,689 / 7Mbytes

③ 전송 종료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나의 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업등록증 출력)

■ 지역산업 민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 출력	관인 출력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 출력 <input type="radio"/> 사무 출력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인허가번호 <input type="radio"/> 민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type="radio"/> 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미 처리	관인선택 <input type="radio"/> 시장 <input checked=""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 출력	
처리부서명	가로 교통과	
담당자명	김지역 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input type="button" value=""/>
특이사항		

제 2016-4850000-08-5-00004 호

행정부서명	관인부서명
담당자명	김민현 12
전화번호	08-2076-6900

옥 외 광 고 사 业 등 록 증

1. 성명(대표자) : 총길동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1911년11월11일

3. 주소 :

4. 업소명 :

5.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작업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1 (효자동3가, 에스원동)

6. 영업내용 :

7. 기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전 주 시 완 산 구 청

민원 출력 관리

▶ 처리 방법

- ① **허가증민원** 버튼을 클릭하여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② 인가(허가)증 출력을 한 뒤 **처리** 버튼을 눌러 민원을 완료한다.

11)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심사및내역등록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옥외광고업등록증재교부신청

민원접수번호: 2014-4640000-0001247 접수일자: 2014-09-11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김**

민원등록번호: 000000*****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산4길 20 (동완산동)

등록번호: 1991-4090073-08-1-00015 조회 관리번호:

옥외광고업 대표자 정보

개인법인구분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옥외광고업 업소정보

업소명: 명동광고

영업장소제자 (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73번지

영업장소제자 (지번):

사무실면적: m² 작업장면적: m² 종업원 수: 1 명

기술능력: 광고도장기능사 1 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1 명 전기공사기사 1 명 전기공사산업기사 1 명

민원번호: 성명: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기술인적사항

영업내용: 광고업

기타

옥외광고업 휴·폐업·재개업 정보

휴·폐업: 폐지 재개업구분: 폐업일자: 2012-05-15 재업일자: 재개업일자:

휴·폐업사유:

옥외광고업 재교부정보

재교부일자: 2019-10-07

재교부사유: 분실

재교부내용: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1 옥외광고업등록증 자격증사본 적합 2014-09-11

처리부서: 영상정보과

처리: 김관리01

처리: 허가증인쇄

처리: 저작

보완보정: 민원결과: 정상처리: 보완/보정: 반려: 처리: 허가증인쇄: 저작

▶ 개요

- 가로교통과 김지역은 통보된 민원의 상세내역 즉, 흥길동이 신청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정보, 옥외광고업소정보, 세부내역 등을 조회한다.

▶ 처리절차

- ① 재교부일자, 재교부사유 등 재교부정보를 입력한다.
- ②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서류심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심사내역을 저장한다.
- ③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④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보완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한다.
- ⑤ 민원을 처리하려면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한다.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결과 처리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9 4640000 0000236	검색	
민원명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유형	허가
민원인	미지노지	주소(도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0다길 87 (성산동, 슈펜하임 성산)
전화번호		주소(지번)	
핸드폰		건별수수료	0
접수자	김관리01	접수일시	2019-01-28 11:06
		처리기한	2019-02-07

■ 단계별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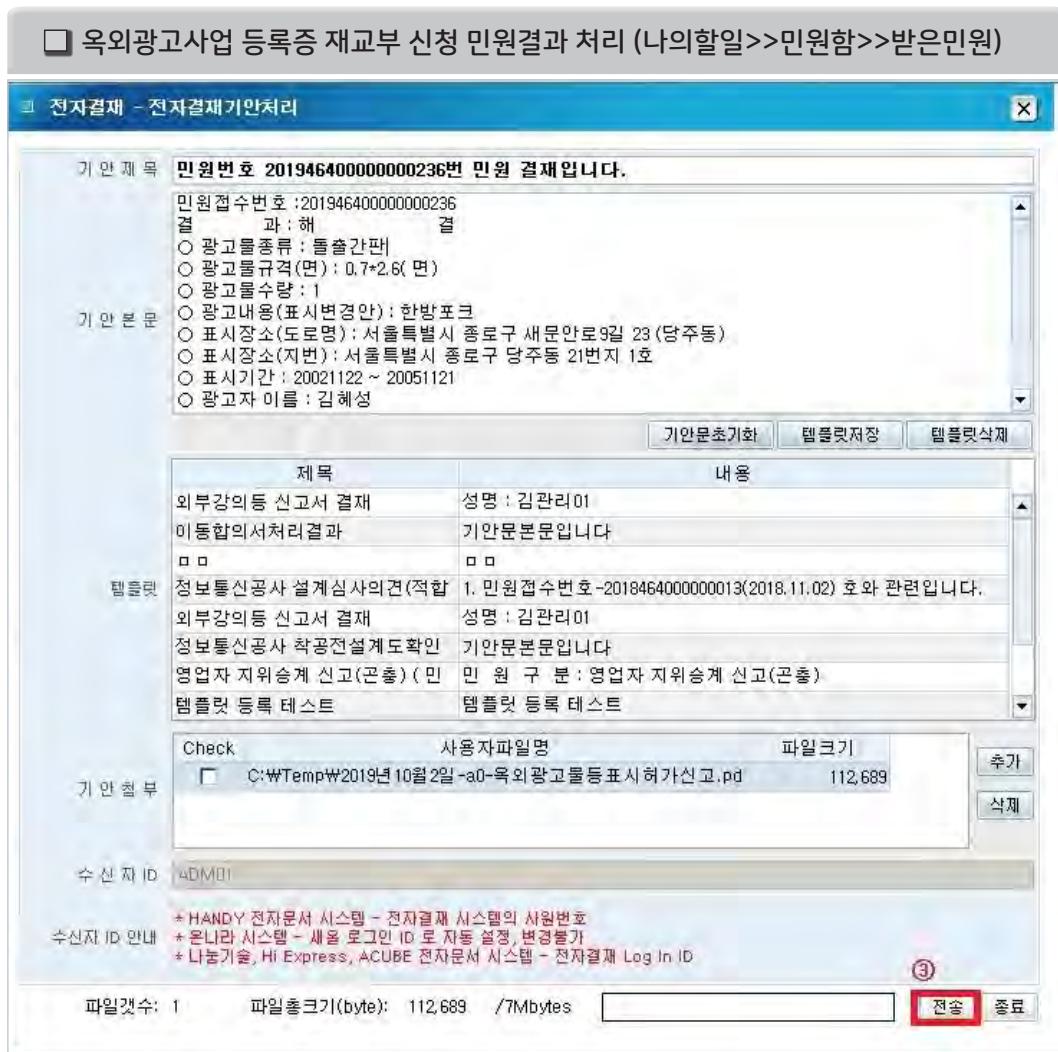
현지조사일	2019-01-28	조사결과	
민원실무개최일	2019-01-28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2019-01-28	개회결과	
기관장결정일	2019-01-28	결정내	

■ 민원결과

처리담당자	김관리01 ADM01	처리책임자	김관리01 ADM01	검색
처리결정내용	해결	완결일자	2019-10-02 15:57	
불가반례시				
처리대안				
미의신청고지여부	예 아니오	미의신청고지근거(문서번호)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전송내역삭제 일괄결재저장 전자결재 ② ① 등록 닫기



▶ 개요

- 민원결과내역을 입력한 후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 처리절차

-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한다.
-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자결재기안처리를 위해 수신자ID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기안을 전송한다.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나의할일 >> 민원함 >> 받은민원 >> 옥외광고업등록증 출력)

■ 지역산업 인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관인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관인 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통관인 <input type="radio"/> 사무통관인
인(허)가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인허가번호 <input type="radio"/> 인허가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별표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처리 <input type="radio"/> 미처리	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시장 <input type="radio"/> 구청장
담당자 출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출력 <input type="radio"/> 미출력		
처리부서명	가로 교통과		
담당자명	김지역23		
전화번호			
기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출력일자	2011-06-29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선택"/>		
특이사항			

제 2016-4850000-08-5-00004 호

처리부서명	완산구
담당자명	김지역12
전화번호	06-2076-5800

옥 외 광 고 사 业 등 록 증

1. 성명(대표자) : 총길동
2.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 1911년11월11일
3. 주소 :
4. 업소명 : 111
5.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작업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자로 21 (호자동3가, 혜원
정통)
6. 영업내용 :
7. 기타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미쳤음을 확인
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전 주 시 완 산 구 구 청

태스트
증명
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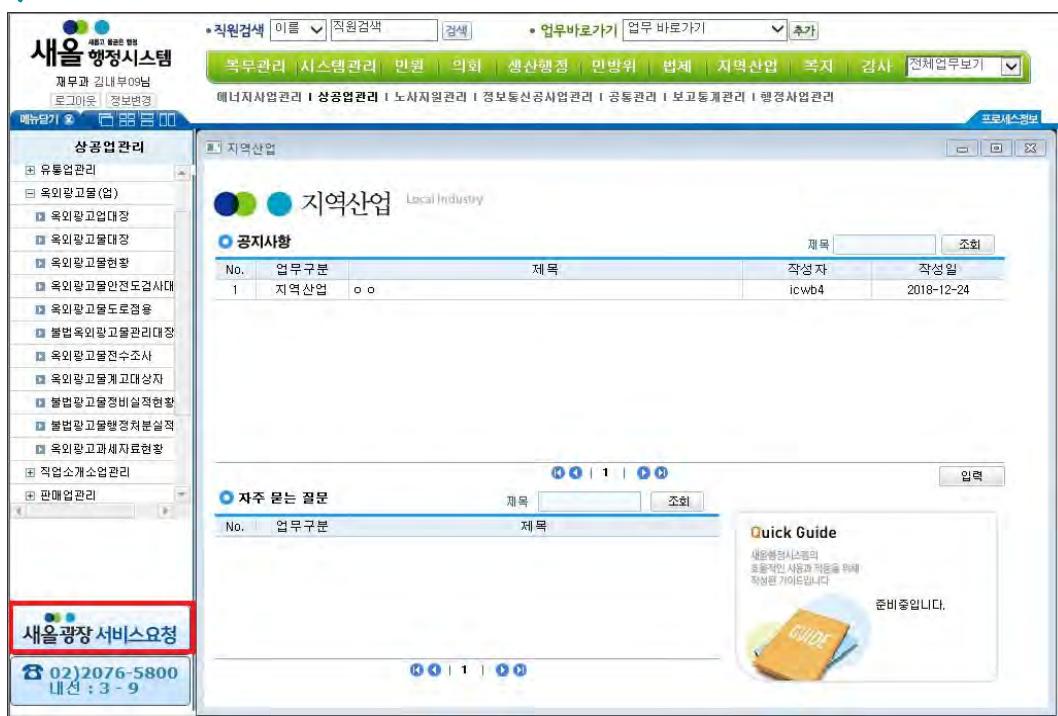
3. 새울광장(www.saiall.go.kr) 안내

새울광장은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포털로, 업무별 매뉴얼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사용에 불편한 기능개선 건의, 자료전환 요청, 단순 문의 등을 게시판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새울광장 접속 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www.saiall.go.kr’을 입력하여 접속하거나, 새울행정시스템 화면 왼쪽하단의 ‘새울광장 서비스요청’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그림 7 새울행정시스템 내 배너위치



2) 옥외광고물(업)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

□ 새울광장 접속 (www.saiall.go.kr) 후 로그인

□ 자료실 메뉴 선택(자료실>매뉴얼 자료)

▶ 개요

- 상단메뉴의 자료실에 마우스커서를 올린 후 매뉴얼 자료를 클릭한다.

□ 매뉴얼 검색 및 다운로드

자료실

업무별 자료
▶ 매뉴얼자료

자료실

업무별 자료 매뉴얼 자료

제목 옥외광고 초기화 조회

번호 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파일

32408 [서울]지역산업 정보통신공사업 매뉴얼입니다. 이진호 2018-12-14 231

31149 [서울]지역산업 [지역산업]대부업, 직업소개소업 매뉴얼입니다. 임슬애 2018-05-16 163

31150 [서울]지역산업 [지역산업] 옥외광고물(업) 매뉴얼 이진호 2018-05-14 323

32158 [서울]지역산업 [지역산업] 승강기관련업관리 매뉴얼 임슬애 2018-05-11 20

30920 [서울]지역산업 [지역산업]상공업관리, 노사지원관리 매뉴얼입니다. 이명진 2017-09-25 243

1 | 2 | 3 | 4 | 5 |

시도 서울 기타

감사
건축주택
경제통상
공보
공유재산
교통
기획
차량관리
죽산
환경

감사
공보
공유재산
기획
농업
도로교통
문화체육관광

사업관리
공통행정(시도)
기술지원(시도)
연계지원(시도)
전자민원(서비스포털)
행정포털(시도)
내부행정(시도)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현장행정

지역산업

지하수개발
차량관리

업무별자료

제목 [지역산업] 옥외광고물(업) 매뉴얼

업무 [서울]지역산업

등록자 이진호 등록일 2018-05-14 14:46

안녕하십니까 새울행정 지역산업 상공업관리 옥외광고물(업) 참고자료입니다.

옥외광고를 사용자매뉴얼 최근 개편 내역입니다.

=====

2018-05-11 블법옥외광고를 관리대장 목록조회 기능개선
2018-05-03 옥외광고를 계고대상자 목록 검색조건 [성명] 개선
2017-08-26 옥외광고를 표시종료일 제한 관련 수정
2017-07-27 옥외광고업대장목록 조회조건 추가 (자격소유자명)
2016-09-06 사업자등록번호 할당 추가
2016-08-10 법개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항목 생년월일 변경
광고물종류코드 변경
: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매뉴얼_서울지역산업_옥외광고물.hwp](#)

▶ 개요

- 검색창에 '옥외광고'를 입력하거나 하단 새울 탭의 지역산업을 선택하여 옥외광고물(업) 매뉴얼 자료를 검색한다.
- [제목: [지역산업]옥외광고물(업) 매뉴얼을 클릭하여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3) 서비스요청 방법

◎ 새울광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서비스요청이 가능하다.

- 기능개선: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기술·업무환경 변경사항 반영, 자체 기능개선
 - 오류: 오류정정 및 하자사항, 오류 보완, 장애복구
 - 단순문의: 단순답변이 가능한 요청사항(사용법설명 등)
 - 교육훈련: 자치단체 사용자 교육 신청이나 이에 대한 질문 등
 - 기술지원: 정보시스템 기술지원/운영상태 점검
 - 행정업무기술지원요청: 자료조회, 처리·보정 등 스크립트 지원 사항
 - 연계지원: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요청사항
 - 기타: 서비스요청분류 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
 - 자료전환: 시스템 확산을 등을 위한 자료 전환 수행
 - 자료요청: 사용자로부터 요청되는 일괄 다운로드 자료

◎ 서비스 요청방법

① 행정구분 시도 서울(시군구) [시도]전산장비 [시군구]전산장비

업무 업무 선택 단위업무 선택

요청구분 고객요청 자체개선

요청처 시도 선택 부서명 상담시스템, 운영현황시스템, 서울광

요청자 요청자 연락처

휴대폰 번호 010 - - 메일주소

② 요청분류 요청분류 선택 요청분류 선택

③ SMS수신 수신요청 수신요청하지않음

내용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들

첨부파일 첨부 삭제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등록 취소

- ① 행정구분에서 시도, 새울(시군구)를 선택한다. 전산장비 관련 서비스요청의 경우 (시도/시군구)전산장비 구분을 선택한다.
- ② 요청분류에 맞는 구분을 선택한다.
- ③ SMS수신요청을 선택하면 진행/처리사항을 SMS로 받아 볼 수 있다.
- ④ 행정업무기술지원요청의 경우 데이터 변경 필요여부에 따라 근거가 되는 내부결재 문서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한다.
- 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역을 저장한다.

4. 옥외광고 행정시스템 질의 및 답변

Q. 옥외광고사업 소재지변경 등으로 타시군구 이관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전출된 시군구에서는 옥외광고업대장에서 업소 조회 후 하단부분 [전출]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지역으로 전송처리 합니다. 전입된 시군에서는 옥외광고업대장 목록에 [전입] 버튼을 클릭하면 전출지역에서 온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업소를 상세조회하여 하단부분에 [전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시군구 대장에서 전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단, 전출처리 후 시스템상 '폐업'으로 표시된다.

Q. 옥외광고물 등의표시신고(허가) 민원처리 후 옥외광고물대장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첫째, 주소 정보가 정확이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 : 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옥외광고물대장메뉴에서 "행정동정비" 항목을 체크 후 조회한다.
둘째,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삭제된 행정동일 경우 :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삭제된 읍면동 자료일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자체 광고물이 아닐 경우 : 표시장소를 관리시군구가 아닌 주소로 등록을 했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다.
대표번호(02-2076-5800)의 지역산업에 문의 주시면 자료 확인 후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민원실에서 접수오류로 인하여 민원명 다르게 접수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첫째,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한다. 민원이 처리 중이고 처리단계가 심사 및 내역등록 단계일 경우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취소 가능하다. 접수취소 후 민원실에서 민원명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민원 결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대표번호(02-2076-5800) 혹은 새울광장 서비스요청을 통해 요청을 주시면 민원 확인 후 접수취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불법광고물 보고통계를 등록 저장 후 시도로 전송하였으나 새울광장의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첫째, 불법광고물 보고통계시스템은 월보로 구성되어있으며, 2011년 6월 보고통계의 경우 2011년 7월에 보고통계 전송을 해야 2011년 6월 보고통계로 책정된다.

둘째, 보고통계 전송 당일에는 새울광장 모니터링 화면에 책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책정까지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5일의 시간이 요구된다.

부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도 조례-시·군·구 조례 4단 비교 표

구분	시행령	시·도 표준조례	시·군·구 표준조례
제1조 ~ 제2조의2 - 목적, 옥외광고물, 개시시설,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정의 - 정치활동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제1조 ~ 제2조 - 제정 목적,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정의	제1조 - 시·도 조례의 제정 목적	제1조 - 시·군·구 조례의 제정 목적
제3조 - 광고물의 분류 및 총 17종 광고물에 대한 정의(벽면 이용,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임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제3조 - 광고물의 분류 및 총 17종 광고물에 대한 정의(벽면 이용,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임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제3조의2 -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 표시대상	제2조~제5조 - 허가 · 신고 및 변경, 연장 제출서류 등
제3조 - 허가 및 신고하는 지역 · 장소 · 물건 - 표시방법 원칙 특정구역 지정	제4조~제10조 - 허가 · 신고 대상 광고물 및 절차; 변경, 연장 등		

<p>제12조~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표시기준 -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할 기준 <p>제15조~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지주,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그 밖의 광고물의 표시방법 <p>제19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표시등 전광판·시용광고 시범사업 근거 	<p>제2조~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표시방법 및 전기 사용 광고물에 대한 추가사항 <p>제9조~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지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p>제5조~제8조, 제10조, 제12조~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이용, 돌출, 공연,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이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p>제21조~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의 완화와 특례 	<p>제18조~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 완화 절차와 완화 사항 <p>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p>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물
<p>표시방법 완화</p>	<p>제3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광고물의 통일모형 및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허가 및 신고 	<p>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 신고 · 변경 · 연장 등에 관한 사항 	<p>제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금지 지역 · 장소 · 물건 열거
<p>광역단위 광고물 허가</p>	<p>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 · 장소 · 물건에 대한 광고물 금지 - 표시방법 강화 특정구역 지정 	<p>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대한 추가 열거 	<p>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에 따른 강화 특정구역 대상지역 및 운영
<p>금지사항 및 표시방법 강화</p>			<p>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 강화 절차와 강화 사항

특정구역·지정 제4조의2 - 지역 주민의 자율적 관리구역 지정	제26조~제27조 - 자율관리구역의 운영 및 주민협의회 구성	제7조~제8조 - 자율협정 사항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 - 정비시범구역의 대상지역 및 운영	제9조~제10조 -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군·구의 지원
제4조의3 -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제22조 -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시·도의 지원	
제4조의4 - 자유표시구역 지정·운영		
제5조(금지광고물등) 금지 광고물 - 시설물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사행성·음란 광고물 금지 등		제11조 -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5조의2(국기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 광고물 질적·산업적 발전 종합계획 수립		제29조 - 공공목적 광고물의 대상 및 표시방법
광고물 제한) 공공목적 광고물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공공목적 광고 특례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 및 운영		제30조~제31조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허가·변경,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제6조의2 - 광고를 정비 및 산업진흥 지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 시·도·시·군·구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32조~제33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	제23조~제24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위원회 구성	제7조의2 - 주요사항 정체를 위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4조~제35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제13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범제	제8조 - 종교·정치·시설물 보호 등 관련 광고를 허가·신고 배제		
안전점검	제9조~제9조의2 - 일반적인 안전점검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제36조~제37조 - 안전점검 대상·기준·시기·방법·위탁 등 세부사항	제25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한 세부사항
위반사항	제10조~제10조의3 - 위반 광고물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등과 시·도와 시·군·구의 합동점검	제39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14조~제16조 - 안전점검 위탁 자격·위탁절차·인전점검 절차 등
		제40조~제42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반출, 귀속 등	제19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제20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사업자 관리	제11조~제11조의2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휴업/폐업 의무 및 결격사유	제44조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 변경/재발급/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절차 등	제21조 - 폐업에 따른 등록증 반환 및 영업소 비자 서류 등
	제11조의3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8조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내용	
진흥기관 설립	제11조의4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교육	제12조 - 종사자 및 안전점검 위탁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49조~제50조 - 교육 대상자 및 계획과 위탁 기준	제22조 - 교육 및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제13조 - 광고물의 허가·취소 기준		
	제14조 - 사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기준	제51조~제53조 - 사업자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및 통보 의무, 취소 및 정지 처분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허가 취소	제15조 - 광고물 허가취소, 사업자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설명표기 의무	제16조 - 광고물에 대한 설명표기 의무	제27조 - 설명제의 세부사항	
수수료	제17조 - 광고물 처리에 대한 시·군·구 수수료 설치 근거	제28조 - 광역단위 광고물의 수수료 및 수수료 납부 절차 등	제24조 - 수수료 기준

<p>규제 재검토</p> <p>제17조의2 - 해가 · 신고, 안전점검 등에 대한 장관의 규제 재검토 의무</p>	<p>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시기</p>
<p>제17조의3~제19조 - 음란 · 토페 · 위반 고정광고물에 대한 징역 · 벌금 및 양벌규정</p> <p>위반에 대한 처리</p>	<p>제20조 - 과태료 대상(위반 유동광고물) 및 과태료 기준</p>
	<p>제25조 - 과태료 부과기준</p>



2020 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발행처 _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연구조사부

주 소 _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8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822 Fax. 02)3274-2860 www.ooh.or.kr

디자인 제작 _ 조명문화사 02)498-3017